



2016 06 22 ————— 2017 07 26

노원구 고등학교

학교구정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노원 청소년단체(가)

화야

협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립본부지회

차 례

| | |
|------------------------|-----|
| I . 조사 개요 | 3p |
| II . 조사 배경 | 5p |
| III . 관련 자료 | 6p |
| IV . 조사의 한계 | 9p |
| V . 조사 결과 | 11p |
| VI .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제안 | 32p |
| 부록 : 못 다룬 내용 | 41p |
| 참고 자료 | 45p |

I. 조사 개요

이번 조사의 목적은 노원구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운영의 근거가 되는 학교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학교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조사 역량의 한계상 조사 범위는 노원구의 고등학교로 한정했다.

학교 규정 수집은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했다.

학교 규정이 충분히 확보되어 조사 범위에 포함된 고등학교는 25곳³⁾ 중 17곳이다.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 | |
|-----------------|---------------------------|
| 1.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 공립, 공학, 공업 특성화고 |
| 2.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 사립, 남고, 공업 특성화고 |
| 3. 대진고등학교 | 사립, 남고, 일반후기고 |
| 4.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 사립, 공학, 상업정보 특성화고 |
| 5.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 사립, 공학, 공업 특성화고 |
| 6. 불암고등학교 | 공립, 공학, 일반후기고 |
| 7. 상명고등학교 | 사립, 공학, 일반후기고 |
| 8. 서라벌고등학교 | 사립, 남고, 일반후기고 |
| 9. 수락고등학교 | 공립, 공학, 자공고 ⁴⁾ |
| 10. 영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 사립, 여고, 가사실업 특성화고 |
| 11. 영신여자고등학교 | 사립, 여고, 일반후기고 |
| 12. 용화여자고등학교 | 사립, 여고, 일반후기고 |
| 13. 월계고등학교 | 공립, 공학, 일반후기고 |
| 14. 인덕공업고등학교 | 사립, 공학, 공업 특성화고 |
| 15. 재현고등학교 | 사립, 남고, 일반후기고 |
| 16. 청원여자고등학교 | 사립, 여고, 일반후기고 |
| 17. 혜성여자고등학교 | 사립, 여고, 일반후기고 |

노원고등학교, 대진여자고등학교, 상계고등학교, 서울아이티고등학교, 영광고등학교,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청원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는 충분히 규정을 확보하지 못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3) 청암예술학교 제외

4) 자율형공립고등학교

노원구의 전체 학교 수와 조사한 학교 수를 유형별로 비교한 그래프

| 분 류 | | 전체 | 조사한 학교 수 | 비율(%) |
|------|----------|----|----------|-------|
| 합 계 | | 25 | 17 | 68 |
| 설립주체 | 공립 | 6 | 4 | 66.7 |
| | 사립 | 19 | 13 | 68.4 |
| 공 학 | 남고 | 6 | 4 | 66.7 |
| | 여고 | 7 | 5 | 71.4 |
| | 공학 | 12 | 8 | 66.7 |
| 유 형 | 일반후기고 | 15 | 10 | 66.7 |
| | 학교장선발후기고 | 1 | 0 | 0 |
| | 특성학교 | 8 | 6 | 75 |
| | 자공고 | 1 | 1 | 100 |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노원 학교 학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체크리스트로 결과를 정리한다. 이를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는지 해석한다. 그리고 개별 학교가 학교 규정으로 학생의 권리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침해하고 있는지 판단할 것이다.

판단의 기준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 관련 법령·조례로 설정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조례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뒤에 조사의 한계, 못 다룬 내용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쳤고 법적 구속력이 있어 학교가 준수하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기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중 학교의 의무가 명확하게 명시된 조항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조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총 10개)

-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체벌을 방지하고 있는가?

-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두발을 규제하는가?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등 용모를 규제하는가?
 복장에 대해서만 학교규칙으로 제한하는가?

- 제13조(사생활의 자유)

교직원 은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닐 때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는가?
 불가피하게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함리적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하지 않는가?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가?

-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간, 장소, 방법이 제한되는가?

-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는가?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는가?
 학생과 교직원 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 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제출되었을 때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는가?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가?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칙의 제·개정안에 개성을 실현할 권리·사생활의 자유·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는가?

-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II. 조사 배경

청소년들을 억압하는 각종 규제와 억압들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며 청소년인권운동의 싹이 튼지 어언 30년이 되어간다⁵⁾

과거에는 “어린 놈들에게 무슨 인권?”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지천에 널렸지만, 지금은 청소년에게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비록 작더라도, 그만큼 사회의 인식은 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전진을 이뤄낸 계층은 학생이다.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냈고, 이를 토대로 학생인권법 제정 시도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점차 마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실태는 학교 밖과 온도 차이가 있다. ‘학교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여전히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⁶⁾. 이는 학생인권이 명분상으로만 받아들여졌을 뿐, 학교 일선에서 제대로 실현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인권법 제정 시도가 좌절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역별 학생인권 실태 차이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가 학생인권 보장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⁷⁾, 한 번도 학생인권 관련 정책이 추진된 적 없는 지역은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다⁸⁾.

과거에는 학생인권 의제를 모든 지역에서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학생인권 실태 개선에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서울시 내에서 지역별로 학교 분위기, 경제 수준, 입시 지형 등의 영향으로 꽤나 차이가 난다는 증언이 많다. 특히 노원구는 인구가 많아 학교 수 역시 평균의 1.5 ~ 2배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수위가 높은 학교가 많다는 평을 듣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명확하게 드러난 자료가 없어 정확히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문제인지 알 수 없다. 노원구 각 학교의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하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또는 정말 심각한지) 알 수 있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분명히 짚어낼 수 있다.

이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5) 청소년운동 우물모임, 청소년 운동 우물우물 정체성과 역사 외씨염 뿌우-!, 2016

6) 인권전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3

7) 인권전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3

8) 인권전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4

III . 관련 자료

1. 학교 규정의 구성

학교 규정은 학교의 법과 같다.
 국가의 모든 운영이 법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듯이, 학교의 모든 운영은 학교 규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법에 포괄적인 운영 방향을 다루는 상위법과 자세한 운영 방침을 다루는 하위법이 있듯이,
 학교 규정도 상위규정인 학칙과 하위 규정인 세부규정으로 나뉘어진다.
 학칙은 학교 운영 전반을 다루고, 학칙에서 다루기엔 너무 양이 많고 세세한 경우 세부 규정으로 넘겨 따로 자세히 다룬다.

아래는 이번 조사에서 주로 언급되는 학교 규정의 이름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분류 | 이름 | 내용 |
|----------|---------------|-------------------------------------|
| 학칙 |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조)에서 명시된 내용 |
| 세부 규정 | 선도규정 | 선도위원회, 징계기준, 절차, 방법 등 |
| | 용의복장규정 | 두발, 교복, 악세서리, 신발, 가방 등 |
| | 휴대폰규정 | 휴대폰 사용 규제, 적발시 처리 등 |
| | 학생회칙 | 학생회 임원 선출, 구성, 소집방법, 정족수, 기능, 임기 등 |
| | 상벌점규정 | 상벌점(그린마일리지) 부여 기준, 절차, 방법 등 |
| | 체벌없는 학교만들기 규정 | 체벌 금지 원칙, 체벌없는 지도방안 제시, 체벌 발생시 조치 등 |
| | 학생생활규정 | 교내외에서 학생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생활태도에 대한 규정 |

학칙은 초·중등교육법에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모든 학교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세부규정의 경우 학교마다 조금씩 양상이 다르다.

*예를 들면

용의복장과 휴대폰을 한 규정에서 모두 다루는 경우,
 학생회칙에서 임원 선출 관련 내용만 별개의 규정으로 다루는 경우,
 상벌점규정 없이 상벌점 관련 내용을 선도규정에서 다루는 경우,
 용의복장규정·휴대폰규정·상벌점규정 등
학생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들을 통틀어 학교생활규정 또는 학생생활규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도

학칙과 세부규정을 모두 통틀어 학칙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고,
 학교 규칙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학교 규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용어와 개념은 세부규정에 대해 다룰 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2. 학교생활규정⁹⁾ 예시안

세부규정은 학교별로 양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
 오히려 다른 학교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세부규정을 학교에서 완전히 새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교육청 등 상위기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수정·보완을 거쳐 확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2년,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최초로 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고등학교·실업계고등학교의 생활규정 예시안을 배포하고 학교별로 생활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하였다¹⁰⁾.

⁹⁾ 여기서 학교생활규정이란 위에서 언급한, 학생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통칭하는 것이다.

¹⁰⁾ 한국교육인적자원부, “학생 체벌기준 엄격 제한”, 2002
 한겨레, “초중고 교내생활규정 자율제정 가능”, 2002
 한국경제, “교육인적자원부, 초중고 교내생활규정 자율제정 가능”, 2002

당시에 언론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체벌이었다.
대부분은 체벌의 조건이 제한되었다는 평이었지만,
오히려 이는 교육부에서 매뉴얼을 통해 체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법적으로도 체벌 금지 조항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를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아
체벌 허용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육부에서 매뉴얼로 체벌을 공식 인정하여 체벌의 명분이 분명해졌다¹¹⁾.

체벌 외에도 두발, 복장, 학생자치회 참여, 징계 내용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2000년 두발자유화 노컷운동으로 14만명이 넘는 학생 서명이 모인 뒤로 교육부는
두발에 대해서는 항상 학교에서 논의해 결정하라고 미루는 행보를 보였는데,
2002년 예시안에서도 역시 ‘별도로 정한다’ 라고만 되어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이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교육부의 예시안에 의견을 표명했다.
체벌금지를 수용 및 체벌조항을 삭제
학교운영위의 학생 참여
교사·학부모가 준수해야 할 사항 추가
학생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심의 서술, 장애학생의 학습권 관련 내용 추가
초등학교·실업고등학교·도농간학교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내용 편집·추가가 그 골자였다.

2011년에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및 운영 길라잡이’ 를 제작·배포했다.

길라잡이 서문에서는

2011년 3월 18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개정은 당시에 발표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해 학교장에게 학칙 변경 권한을 주고,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출석정지 도입 등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학칙 서약식을 권장하는 내용이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상위법을 개정하고 학교의 학생인권 침해를 용인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길라잡이에는 2002년의 예시안처럼 생활규정 전문을 통째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대신 생활규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학교에서 생활규정으로 삼을 수 있는 조항을 예시로 들고 있다. 예시로 제시된 내용에는 두발,
용의·복장, 학생회, 통신기기 규제, 서약서, 간접체벌(앉았다 일어시기) 등의 내용이 있다.

2012년에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을 제작·배포했다.
중심 내용은 2011년에 제작한 길라잡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설명과 예시가 보다 풍부해 교육부의 입장과 권장사항이 더욱 잘 드러났다.
2014년에는 2012년의 매뉴얼에서 부적절한 예시를 삭제·대체하고 정보를 보완한 개정판이 나왔다¹²⁾.

교육부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서울의 경우, 2016년에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제작했다.

서울시교육청 예시안은 법적 근거로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하고 있어
교육부 예시안에 비해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논란에서 자유롭고,
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된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비혼모 등에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교육부 예시안 역시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논란이 된 간접체벌 허용 조항 등도 포함되어 있다.

동아일보, “중고생 체벌 ‘영향이 10회 이내’ ...교육부 예시안 제시”, 2002
미디어오늘, “학생은 없고 체벌만 있다”, 2002

11) 교육부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을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 ‘간접체벌’ 은 괜찮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12) 휴먼컬처아리랑 출판사에서 2015년에 같은 이름의 매뉴얼을 출판하였으나, 이는 새로운 개정판이 아니라 기존의 매뉴얼과 같은 내용임을 확인했다.

3. 학교규정 조사자료

이번 실태조사 이전에도 학교 규정에 대한 조사는 간간히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진행된 학교규정 조사자료를 이번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학교규정이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각 조사별로 관점과 조사 범위 등이 다르므로 직접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2001년,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교육개혁을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에서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을 진행하여 전국에서 244개 중·고등학교의 학교 규정, 그 중에서도 학생생활과 관련 깊은 학생회칙·선거규정·용의복장규정·선도규정을 모아 분석했다. 서문에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학교를 지배하는 규율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있으나 실제로’ 규율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2005년, 교육부에서 ‘두발관련 자료 및 의견’ 을 발표했는데, 2005년 5월까지 조사된 전체 중학교 중 2,761개교(92.56%) 고등학교 중 1,924개교(91.10%)가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고 있었고, 32개의 중학교와 44개의 고등학교에서 기계나 가위로 학생의 두발을 자른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등에서 내용이 언급만 되고 있을 뿐 원문은 남아있지 않아, 조사 기준이 정확히 학교 규정인지는 알 수 없다.**

2006년,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21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청소년위원회 의뢰를 받아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를 진행했다.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학생 인권의 개념, 학생인권 침해사례 분석, 외국의 학교 규칙 내용 분석 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이 조사에서는 5개 중·고등학교의 두발, 교복, 양말·신발·명찰 관련 규정을 비교·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열린우리당 구본회 의원이 2006년 학교생활규칙을 개정했다고 보고한 학교 중 156개 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개정 내용 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실려있다. 실적상으로도 보면 학교생활규칙을 민주적으로 개정했다고 보고한 학교는 전체의 70% 이상이었으나, 개정된 학교 중 실제로 개선된 경우는 30%를 채 넘지 못했다.

같은 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생활규정 분석팀에서는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교칙 분석보고서’ 를 발표했다. 전국 16개 시·도의 202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선도·징계 규정, 학생회 규정, 용의복장규정, 체벌규정을 분석해 그 경향을 분석한 것이었다. 서문에서는 학교 규정을 개정하면 인권 침해가 줄어들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며, 학교규정·학생인권에 대한 정보의 부족,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 등을 근거로 학칙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0년에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사랑은 19금이 아니야! 청소년 연애 탄압 조사’ 를 진행했다. 학교알리미(초중등교육정보 공시서비스),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일부 지역은 전수조사를 하고, 다른 일부 지역은 무작위로 학교를 선택해 조사하였다. 다른 학교 규정 조사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은 관계 규제 문제를 처음으로 다뤘다는 의미가 있다. 조사한 지역에서 ‘연애 탄압 규정’ 이 있는 학교는 대부분 70% 이상이었으며, 연애탄압 규정이 적은 지역조차도 60% 선에서 더 내려가지 못했다.

2015년에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불량학칙 공모전’ 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공모전은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부 학교를 선정하여 직접 조사하는 대신 불량학칙 사례를 모았다는 점에서 이전의 조사와 차이가 있다. 사례는 크게 자유·권리 제한, 차별, 단속·처벌, 학칙 제·개정시 학생 참여 배제로 분류되었고, 총 107개의 학칙이 모였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시의회 장인홍 의원실은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부터 ‘학교규칙 점검 결과’ 를 보고받아 공개했다. 이 점검은 서울시 내의 모든 초등학교(598개), 중학교(384개), 고등학교(318개)의 학교 규정을 대상으로 했으며, 내용은 규정의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선도규정, 학생인권 보호규정, 학생회 규정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IV. 조사의 한계

이번 조사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몇 가지 한계 지점이 있었다.
조사의 맥락을 더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그리고 추후에 비슷한 조사를 진행할 경우를 위해 한계 지점을 밝혀둔다.

조사 자료의 한계

이번 조사는 조사 범위를 노원구 내의 모든 고등학교로 잡고,
이 학교들의 모든 규정(학칙 및 세부규정)을 확보하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8개 학교¹³⁾의 규정을 충분히 찾지 못해 조사에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조사를 진행한 17개 학교 중에서도 9개의 학교는 학생회칙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학생자치조직 구성원 제한 부분의 내용이 특히 부족하다.
그 외에도 학교에서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확보하지 못해 규정 분석에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있다.

예를 들어, 확보된 규정 중에서 체벌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학교가 있다면,
이 학교가 학칙으로 체벌에 대해 아무것도 규정된 것이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확보되지 않은 규정 중에서 체벌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벌 금지나 체벌 허용이 명시된 경우는 결과 분석에 유의미하게 쓰이는 반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결과 분석의 의미가 떨어진다.

또한,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예전 규정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한 학교규정 자료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영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의 2010년 규정이다.
학교별로 어느 규정을 참고했는지는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한계는 규정을 학생 또는 교사로부터 구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수집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만약 이후에 비슷한 조사가 진행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공기관과 협력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여 학칙을 확보했을 때
더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조사 자료 수집이 2016년 8월까지만 이루어졌으므로,
이후에 개정된 규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역시 이번 조사의 한계이다.

조사 범위의 한계

이번 조사는 조사 범위를 노원구 내의 모든 고등학교로 한정했다.
조사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제한된 인력으로 보다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조사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생긴다.
앞서 제시한 다른 학칙 조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노원구 외에도, 고등학교 외에도 ‘불량학칙’은 분명히 있다.
그런만큼 원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교를 대상으로도 비슷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 방식의 한계

이번 조사는 노원구 고등학교 학칙으로 학교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학칙만으로 학교 현장의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학칙으로 제정만 되어있는 사항이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 있고,
반대로 학칙으로는 규정되지 않았어도 관습이나 관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도 있다.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징계를 내리는 것처럼 학칙을 오용·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규정끼리 서로 충돌하여 어느 쪽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학칙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이처럼 학칙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¹³⁾ 노원고등학교, 대진여자고등학교, 상계고등학교, 서울아이티고등학교, 영광고등학교,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청원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청암예술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일반적인 고등학교와 성격이 달라 이번 조사에서는 고등학교로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학칙으로 규정할만한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조례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에서는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인 학생의사에 반하여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등을 강제해선 안된다고 되어있지만,

보통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의 운영방향은 학칙으로 규정하기보단 내부 논의 및 결재를 거쳐 정한다.

이와 같은 조사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부 회의록을 입수하거나 학생이 직접 겪은 사례를 모으는 등 보다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판단 기준의 한계

이번 조사는 학생인권조례를 기준으로 학교의 실태를 판단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 내에서 합의를 거친 내용이므로 그만큼 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학교에 강제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학칙으로 반영되지 않은 학교는

그 최소한의 내용도 이행되지 않을만큼 학생인권 실태가 열악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한계도 분명 있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조례로서 안착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논란과 타협의 과정이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조례안작성팀이 작성한 주민발의안 시안(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2010)

을 지금의 학생인권조례와 비교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붙었고,

학교 내의 집회나 표현의 자유를 학교규정으로 제한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학생의 언론활동이나 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 라는 의무조항이 ‘노력해야한다’ 로 약화되었다.

또한,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전체 학생의 의견을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열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한다고 해서 학생의 인권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내의 사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조례에서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는 ‘복장’의 범위는 어디인가?

복장은 좁게 보면 옷만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넓게 보면 교복 뿐만 아니라 양말, 속옷, 판지, 팔찌, 모자, 문신, 머리끈, 배지 등이 모두 복장에 들어갈 수 있다.

조사 결과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셋째,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다루지는 않았다는 점이 있다.

예를 들어,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 필요한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어,

면허만 따다면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노원의 몇몇 고등학교에서는 오토바이를 사용할 경우 상당한 징계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이런 내용은 <부록 : 못 다룬 내용>에서 언급할 것이다.

넷째,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강제·금지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추려내는 과정에서 빠지게 된 내용이 있다.

책임져야 할 주체나 책임져야 할 내용, 또는 책임 여부가 애매한 것들이다.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다룬 내용은 학생인권조례에서 다루는 것보다 훨씬 한정되어 있다.

추려내는 과정에서 빠진 내용 역시 <부록 : 못 다룬 내용>에서 언급할 것이다.

이 외에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 외 지역에서 학칙 조사를 했을 때 이번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기는 애매하다는 점도 이번 조사의 한계이다.

V. 조사 결과

1.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 경기기계공업 고등학교 | 광운전자공업 고등학교 | 대진고등학교 | 동산정보산업 고등학교 | 미래산업고등 학교 | 불암고등학교 |
|--------------|----------------|----------------|--------|----------------|--------------|--------|
| 체벌금지 | 0 | 0 | X | 0 | 00 | 00 |
| 학생고충처리센 터 | X | 0 | X | 0 | X | X |
| 체벌조치 | X | X | X | 0 | X | X |

| | 상명고등학교 | 서라벌고등학 교 | 수락고등학교 | 염광여자메디 텍고등학교 | 영신여자고등 학교 | 용화여자고등 학교 |
|--------------|--------|-------------|--------|-----------------|--------------|--------------|
| 체벌금지 | 0 | X | 0 | 00 | X | 0 |
| 학생고충처리센 터 | 0 | X | 0 | X | X | X |
| 체벌조치 | 0 | X | 0 | X | X | X |

| | 월계고등학교 | 인덕공업고등 학교 | 재현고등학교 | 청원여자고등 학교 | 혜성여자고등 학교 |
|--------------|--------|--------------|--------|--------------|--------------|
| 체벌금지 | 0 | 00 | 0 | XX | 0 |
| 학생고충처리센 터 | 0 | X | 0 | X | 0 |
| 체벌조치 | 0 | X | 0 | X | 0 |

<점검기준>

체벌금지

포괄적으로 체벌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00)

금지하는 체벌의 유형을 제시하거나, 체벌을 지양하거나, 체벌보다 다른 방법을 권장하는 등 체벌을 부정적으로 다루지만 체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은 경우 (0)

아무런 언급도 없는 경우 (X)

완전히 허용되는 체벌의 유형을 제시하거나 포괄적으로 체벌을 허용한 경우 (XX)

학생고충처리센터

학생고충처리센터를 운영도록 명시해둔 경우 (0) / 그렇지 않은 경우 (X)

체벌조치

체벌 발생 시에 조치 방법을 명시해둔 경우 (0) / 그렇지 않은 경우 (X)

※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규정이나 체벌대안규정 등에서 나오는 성찰교실, 성찰프로그램 등 소위 '문제행동 학생 지도 방법'은 체벌발생시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벌을 지양한다.

하지만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17개 중 13개의 학교에서 체벌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4개 학교에서는 '체벌을 전면금지' 등 포괄적으로 체벌을 금지한다고 명시해놓았으며,

9개 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금지하는 체벌의 유형을 명시했다.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¹⁴⁾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4) 단,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는 '일상적인 체력단련을 초과하는 기합형태의 체벌' 이라고 약간 수정했다.

하지만 3개 고등학교는 체벌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으며, 청원여자고등학교는 체벌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주의조치 및 교정의 교육적 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벌’의 내용을 정해두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교육벌 명칭 | 방법 | 제한사항 | 비고 |
|--------------------|---|---|--|
| “앉았다 일어서기” | 소지품을 해제한 상태로 발 뒷꿈치가 엉덩이 부분에 완전히 닿을 정도로 앉았다가 무릎을 곧게 펴고 서기 | 10회 연속 시행을 금하며, 총 시행 횟수 30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시행 전 교육벌 시행의 이유와 그 목적을 설명한다. -학생 개인의 시행 자유의사를 존중 한다. |
| “빠른 걸음으로 걷기” | 소지품을 해제한 상태로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운동장 또는 트랙을 한 방향으로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걷기 | 총 거리 최소 300m이상 최대 700m미만 범위에서 시행 한다. | -반드시 시행 전 학생 개인의 건강상태 및 체력의 한계를 파악하여 강도를 조절한다. -교육벌 거부할시 생활평점의 최고 벌점을 부과한다. |

7개의 학교에서 학생고충처리센터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17개 중 7개의 학교는 학생들이 체벌 발생을 알릴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고충처리센터 게시판을 운영하고, 신고된 사항이 비밀로 유지되게끔 하고 있다.

이 학교들은 모두 금지하는 체벌의 유형을 명시하여, 체벌을 지양하는 학교였다.

6개의 학교에서 체벌 발생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시했다.

17개 중 6개 학교는 체벌 발생시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다.

1. 신고 : 체벌 발생 시 학생은 학생고충처리센터 또는 교감에게 직접 체벌 상황에 대해 알린다.
2. 조사 : 교감은 교사와 학생에게서 체벌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학생과 교 사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준다.
3. 중재 : 교감은 교사 학생 간 중재 및 화해를 유도하며, 학생과 교사 사이에 상호 수용 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4. 연수명령 조치 : 학교장은 반복적으로 체벌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방학을 이용해 자 비연수를 이수하도록 명령하며, 연수는 분노 관리 및 대화 방법, 분쟁 해결 및 평화교육 등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한다.

이 학교들은 모두 금지하는 체벌의 유형을 명시하며, 학생고충처리센터를 게시판을 운영하는 학교였다.

2. 개성을 실현할 권리

| | 경기기계공업 고등학교 | 광운전자공업 고등학교 | 대진고등학교 | 동산정보산업 고등학교 | 미래산업고등 학교 | 불암고등학교 |
|----------|----------------|----------------|--------------------|----------------|------------------|------------------|
| 길이 제한 | 0 | 00 | 00 | 00 | 00 | 0 ¹⁵⁾ |
| 모양 제한 | 0 | 0 | 0 | 0 | 0 | 0 |
| 색 제한 | 0 | 0 | 0 | 0 | 0 | 0 |
| 조건/ 친사회적 | 0 | 0 | X | 0 | 0 | 0 |
| 조건/ 학생다움 | 0 | X | X | 0 | X ¹⁶⁾ | 0 |
| 조건/ 검소함 | 0 | 0 | 0 | 0 | 0 | 0 |
| 예외/ 직업 | X | 0(예체능특기생) | 0 | X | X | X |
| 예외/ 신체문제 | X | 0(신체이상자) | 0 | X | X | X |
| 예외/ 태생 | X | X | X | X | X | X |
| 별점 | 2(20%) | 10(50%) | 1(7%)/2(3%)/3(20%) | 2(5%) | - | 2(10%) |
| 두발 벌 | 0 | 0 | X | X | X | X |
| 정기 점검 | X | X | 0 | X | X | X |

| | 상명고등학교 | 서라벌고등학 교 | 수락고등학교 | 염광여자메디 텍고등학교 | 영신여자고등 학교 | 용화여자고등 학교 |
|----------|-----------|-------------|--------|-----------------|--------------|------------------|
| 길이 제한 | 00 | 00 | 00 | 0 | X | X |
| 모양 제한 | 0 | 0 | 0 | 0 | 0 | 0 |
| 색 제한 | X | X | 0 | 0 | X | X |
| 조건/ 친사회적 | 0 | 0 | X | 0 | 0 | 0 |
| 조건/ 학생다움 | 0 | X | 0 | X | X | 0 |
| 조건/ 검소함 | X | X | X | 0 | X | 0 |
| 예외/ 직업 | 0(공중파에출연) | X | X | X | X | X |
| 예외/ 신체문제 | 0(탈모,홍터등) | X | X | X | X | X |
| 예외/ 태생 | 0(자연갈색등) | X | X | X | X | ? ¹⁷⁾ |
| 별점 | 2(10%) | 2~3(40~60%) | 1(5%) | 20(40%) | - | 2(-) |
| 두발 벌 | X | X | X | X | X | X |
| 정기 점검 | X | X | X | X | X | X |

| | 월계고등학교 | 인덕공업고등 학교 | 재현고등학교 | 청원여자고등 학교 | 혜성여자고등 학교 |
|----------|----------------------------------|--------------|------------------|--------------|------------------|
| 길이 제한 | ? ¹⁸⁾ | 0 | 0 | 00 | 00 |
| 모양 제한 | 0 | 0 | 0 | 0 | 0 |
| 색 제한 | 0 | 0 | 0 | 0 | 0 |
| 조건/ 친사회적 | 0 | X | X | X | X |
| 조건/ 학생다움 | 0 | X | X | 0 | X |
| 조건/ 검소함 | 0 | X | X | X | X |
| 예외/ 직업 | X | X | ? ¹⁹⁾ | X | ? ²⁰⁾ |
| 예외/ 신체문제 | X | X | 0 | X | ? ²¹⁾ |
| 예외/ 태생 | X | X | ? ²²⁾ | X | ? ²³⁾ |
| 별점 | 3(15%)/-(33%) ²⁴⁾ | - | 2(10%) | X | 1(7%) |
| 두발 벌 | X | X | X | X | X |
| 정기 점검 | X | X | 0 | X | X |

15) 학생 용의복장 규정에는 자세한 길이 제한이 나와있지 않지만, 학생 선도 규정에는 길이 규정에 맞지 않은 경우에 별점이 있어 길이 규정이 있는 것으로 표기했다.

16) "성인 머리 형태로 하지 않는다"

17) "기타 허용 범위는 생활지도부장이 판단하여 조치한다 "

18) 구레나룻, 삭발 등 금지하는 머리 형태는 있지만 금지하는 길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다.

19) "질병이나 기타의 상당한 이유로 청원하여 학교장의 개별적인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두발지도를 면할 수 있다 "

20) "단, 생활지도부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 "

21) 5)와 같다

22) 4)와 같다

〈점검기준〉

길이 제한

구체적인 길이(3cm, 옷깃에 닿지 않는, 귀를 덮지 않는 등)가 명시되어 있으면 (OO)
대강의 길이(긴, 짧은 등)만 명시되어 있으면 (O) /아무런 제한도 없으면 (X)
단, 구체적인 길이와 대강의 길이가 모두 명시되어 있으면 (OO)로 한다.

모양 제한

파마, 투블럭 등 특정 머리 모양을 강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색 제한

특정 머리색을 강제·제한하는 경우나 염색·탈색 등의 머리색 변화를 제한하는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조건 친사회적

두발규제의 시행 방향이나 근거로 학생 두발에 대한 사회의 관점(혐오, 거부감 등)을 반영한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조건 학생다움

두발규제의 시행 방향이나 근거에 '학생다운'·'학생 신분'에 부적절한 등 학생 계층의 특수성을 내세운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조건 검소함

두발규제의 시행 방향이나 근거로 검소함(단정함,? 등)이 드러난 경우 (O) /그런 내용이 없는 경우 (X)

예외 직업

예체능계, 방송 출연 등 진로·직업상의 이유로 두발 규제에 예외를 두는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예외 신체문제

흉터 가리기, 새치 등 신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에 두발 규제에 예외를 두는 경우 (O)
딱히 언급이 없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X)

예외 태생

머리 색, 모양 등이 태어났을 때부터 규정과 맞지 않았을 때 두발 규제에 예외를 두는 경우 (O)
딱히 언급이 없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X)

※ 예외 항목은 두발 규제 전체에 대한 예외인지 일부에 대한 예외(예:길이는 아니고 염색만 허용)인지 구분 없이 적는다. 두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허용하는 예외(예:두발을 검은색으로 하기 위한 염색)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발 규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경우가 아니면 예외로 분류하지 않는다(예:조금만 더 기를 수 있게 허용).

벌점

벌점이 있을 경우 벌점을 쓰며, 적발 횟수에 따라 벌점이 달라질 경우 따로 적고
각 벌점 뒤에 징계 처분(주로 교내봉사)이 되는 최소 벌점의 몇%에 해당하는지 적는다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다르다면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는다.

예를 들어, 길이 위반에 벌점 3점, 염색에 벌점 5점이고 적발 때마다 벌점이 2배로 늘어난다면

벌점 50점에 교내봉사일 경우 5(10%)/10(20%)/20(40%)/...

벌점규정이나 선도규정을 확보하지 못해 벌점이나 징계처분이 되는 최소벌점을 알 수 없는 경우 - 로 표시한다.

두발벌

벌로서 두발 변형을 강제 집행하는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정기점검

정기적인 두발 단속 시행에 대해 언급된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두발규제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는 단 하나도 없었다. 길이 제한이 없는 곳은 둘 뿐이다.

17개 중 9개 학교에서 구체적인 길이 또는 제한선까지 명시하며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고 있었다.

5개의 학교는 자세하게는 아니었지만 두발의 길이가 어때야 하는지 규정했다.

두발 길이 제한이 보이지 않는 학교는 2곳 뿐이었다.

17개 중 한 학교도 예외없이 모든 학교에서 두발의 모양과 색을 제한하고 있었다.

23) 5)와 같다

24) 상벌점제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징계 처분이 되는 최소 벌점은 20점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벌점표에는 3번 이상 두발지도에 불응할 시 징계한다고 되어있으며, 선도규정에는 5회 이상 불응시 교내봉사라고 되어있다.

12개의 학교에서 학칙으로 두발에 대한 학교의 관점을 드러냈다.

17개 중 12개의 학교에서 학칙으로 두발에 대한 학교의 관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의 관점을 크게 **친사회적, 학생다움, 검소**로 분류했다.

17개 중 8개의 학교에서 친사회적인 두발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두발이 친사회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세간에서 통용되는 인식에 맞는 머리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 머리’** 여야 한다는 것이다.

17개 중 7개의 학교에서 학생다운 두발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두발이 학생다워야 한다는 것 역시 본질적으로는 세간에서 통용되는 인식에 맞는 머리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를 **‘학생다운 머리’** 라고 이름붙이면서 학생에 대한 학교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7개 중 9개의 학교에서 검소한 두발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검소함이란 **‘친사회적 두발’** 또는 **‘학생다운 두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모아 한 단어로 압축한 것이다.
예를 들어, 단정함, 요란하지 않음, 장식이 없는, 무채색의, 자연스럽게 짧아지는, 지저분하지 않은 등이 있다.

4~6개 학교에서만 두발 규제에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나마도 소수에게만 적용된다.

두발규제 중 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은 직업상 두발규제가 치명적인 경우,
신체 문제때문에 두발을 깎을 수 없는 경우, 태어날 때부터 머리 모양이 규제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11~13개 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외없이 두발규정을 적용했다.

2개 학교만이 직업상 두발규제가 치명적인 경우에 예외를 두었다.

상명고등학교는 공중파에 출연하거나 광고를 찍는 등 허들이 굉장히 높는데 비해,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는 예체능 특기생이면 두발규제 면제가 가능하다.
재현고등학교와 혜성여자고등학교 역시 비슷한 내용이 있으나 학교장이나 생활지도부의 허락을 맡아야 해서
학칙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3개 학교만이 신체 문제로 두발을 깎을 수 없는 경우에 예외를 두었다.

신체 문제 때문에 두발을 깎을 수 없는 경우는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기르는 경우, 탈모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혜성여자고등학교 역시 비슷한 내용이 있으나,
생활지도부의 허락을 맡아야 해서 학칙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1개 학교만이 태생부터 머리 모양이 규제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 예외를 두었다.

용화여자고등학교, 재현고등학교, 혜성여자고등학교 역시 비슷한 내용이 있으나,
생활지도부의 허락을 맡아야 해서 학칙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두발규정 위반에 벌점이 없는 학교는 한 곳 뿐이다.

14개 학교 중 두발규제 위반에 벌점이 정해지지 않은 곳은 **청원여자고등학교 단 한 곳 뿐이다.**
벌점의 평균은 약 4점이었으며, 약 9번 가장 위반했을 때 징계가 내려졌다.
단, 벌점 없이 선도규정에만 있는 경우나 벌점 몇점에 징계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계산에서 제외했다.
가장 벌점 부담이 큰 학교는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와 서라벌고등학교로,
이 두 곳은 두세 번만 두발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당할 만큼 벌점이 쌓인다.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와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두발벌’ 을 시행하고 있다.

두발벌이란, 두발 규정 자체와 상관없이 별도로 두발 변형을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와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는 각각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흡연, 청소년법 위반, 교칙위반)
흡연이 적발된 경우 및 두발·복장·용의 지도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 **두발을 강제로 변형**하고 있다.

대진고등학교와 재현고등학교에서 두발규정 정기점검 기간을 규정해두었다.

대진고등학교와 재현고등학교에서 월 1회, 사전예고 후 두발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재현고등학교는 연 4회(학기 초, 중간고사 후)에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하고,
초기엔 담임이 책임지도하다 시정되지 않으면 **학부모를 호출**하고
생활지도부 교사와 협력하여 지도하라고 방법까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 |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 대진고등학교 |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 미래산업고등학교 | 불암고등학교 |
|----------|------------|------------|------------------|---------------------------------------|-------------------------|------------------|
| 교복변형 규제 | X | X | 0 | 0 | 0 | 0 |
| 보온 규제 | X | 0 | 0 | 0 | X | 0 |
| 모자 규제 | X | 0 | X | X | X | X |
| 장신구 규제 | X | 0 | 0 | 0 | 0 | 0 |
| 명찰 규제 | 0 | 0 | 0 | 0 | X | 0 |
| 가방 규제 | X | 0 | 0 | 0 | 0 | X |
| 신발 규제 | 0 | 0 | 0 | 0 | 0 | 0 |
| 양말 규제 | X | X | X | 0 | X | X |
| 내복 규제 | X | X | X | X | X | X |
| 신체 규제 | X | 0 | 0 | 0 | 0 | 0 |
| 바지 허용 | ?25) | - | - | 0 | 0 | ?26) |
| 조건/ 친사회적 | X | X | X | 0 | X | X |
| 조건/ 학생다움 | X | 0 | X | 0 | 0 | 0 |
| 조건/ 검소함 | 0 | 0 | 0 | 0 | 0 | 0 |
| 별점 | 2(20%) | 10(50%) | 2(13%) | 20(50%)/10(25%)/5(13%) ²⁷⁾ | - | 5(25%) |
| | 상명고등학교 | 서라벌고등학교 | 수락고등학교 |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 영신여자고등학교 ²⁸⁾ | 용화여자고등학교 |
| 교복변형 규제 | 0 | 0 | 0 | 0 | 0 | 0 |
| 보온 규제 | 0 | X | 0 | 0 | 0 | 0 |
| 모자 규제 | X | X | 0 | X | X | X |
| 장신구 규제 | 0 | 0 | 0 | 0 | 0 | 0 |
| 명찰 규제 | 0 | X | 0 ²⁹⁾ | 0 | X | 0 |
| 가방 규제 | 0 | X | 0 | X | 0 | 0 |
| 신발 규제 | 0 | X | 0 | 0 | 0 | 0 |
| 양말 규제 | X | X | X | X | X | 0 |
| 내복 규제 | X | X | X | 0 | 0 | 0 |
| 신체 규제 | 0 | X | 0 | 0 | 0 | 0 |
| 바지 허용 | 0 | - | 0 | X | X ³⁰⁾ | X ³¹⁾ |
| 조건/ 친사회적 | X | X | X | 0 ³²⁾ | X | X |
| 조건/ 학생다움 | 0 | 0 | 0 | 0 | 0 | 0 |
| 조건/ 검소함 | 0 | X | 0 | 0 | 0 | 0 |
| 별점 | 10(50%) | 2(40%) | 1(5%) | 5(10%) | - | 2(-) |
| | 월계고등학교 | 인덕공업고등학교 | 재현고등학교 | 청원여자고등학교 | 혜성여자고등학교 | |
| 교복변형 규제 | 0 | 0 | X | 0 | 0 | |
| 보온 규제 | 0 | X | 0 | 0 | 0 | |
| 모자 규제 | X | X | X | X | 0 | |
| 장신구 규제 | 0 | 0 | 0 | 0 | 0 | |
| 명찰 규제 | 0 | 0 | 0 | 0 | 0 | |
| 가방 규제 | 0 | 0 | 0 | 0 | 0 | |
| 신발 규제 | 0 | 0 | 0 | 0 | 0 | |
| 양말 규제 | 0 | 0 | X | X | 0 | |
| 내복 규제 | 0 | 0 | X | 0 | 0 | |
| 신체 규제 | 0 | 0 | X | 0 | 0 | |
| 바지 허용 | 0 | 0 | - | X | X | |

25) 하복은 반바지가 허용되지만 동복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26) 동복 하의로 바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하복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27) 횟수에 따른 별점이 아니라 위반 강도(상/중/하)에 따른 별점이다.

28) 영신여자고등학교의 복장규정은 타 학교에 비해 '권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클 수 있으나, 다른 학교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했다.

29) 단, 다른 학교와 달리 목걸이 형태로 패용한다고 형태가 명시되어 있다.

30)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31) 하절기에 생활복을 입을 수는 있다.

32) "위협적이지 않은 모양새"

| | | | | | |
|----------|---------------|---|--------------|---------------|--------------|
| 조건/ 친사회적 | X | O | X | X | X |
| 조건/ 학생다움 | X | X | X | O | O |
| 조건/ 검소함 | O | X | O | O | O |
| 별점 | 2(10%)/(-20%) | - | 1(5%)/(100%) | 2(10%)/(100%) | 1(7%)/(100%) |

〈점검기준〉

교복 변형 규제

교복(상·하의)의 변형을 일부 제한하거나 완전히 금지하는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보온 규제

보온을 위한 목도리, 장갑, 외투 등을 특정 디자인으로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모자 규제

모자를 금지하는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장신구 제한

피어싱(귀걸이, 코걸이 등)·목걸이·반지·팔찌·머리띠 등 장신구(액세서리)를 제한 및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명찰 규제

학생증을 반드시 패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O)/ 그렇지 않은 경우 (X)

가방 규제

가방의 디자인, 종류, 색 등 그 특징을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신발 규제

신발의 디자인, 종류, 색 등 그 특징을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O)/ 그렇지 않은 경우 (X)

양말 규제

특정 양말을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양말 자체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내복 규제

교복 안에 입는 옷(반팔 티, 민소매 등)

내복, 속옷을 특정 디자인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신체 규제

수염, 손톱(매니큐어 등), 피부(문신, 화장 등), 눈썹(속눈썹 연장, 그리기 등)

눈(컬러렌즈 등) 등 머리카락 외에 신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바지 허용

여학생의 바지 착용이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O)

동복 또는 하복 한쪽에서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 (Δ)/ 그렇지 않은 경우 (X)/ 남학교인 경우 (-)

조건 - 친사회적

용모·복장규제의 시행 방향이나 근거로 학생의 용모·복장규제에 대한 사회의 관점(단정함, 혐오, 거부감 등)을 반영하였을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조건 - 학생다움

용모·복장규제의 시행 방향이나 근거에

·학생다운·학생 신분에 부적절한·성인 등 학생 계층의 특수성을 내세운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조건 - 검소함

용모·복장규제의 시행 방향이나 근거로 검소함('요란한', '지나치게 화려한', '수수한', '단정함',

어두운 계열의', '원색', '사치품', '고가', '현란한', '장식이 있는' 등)이 드러난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별점

별점이 있을 경우 별점을 쓰며, 적발 횟수에 따라 별점이 달라질 경우 따로 적고

각 별점 뒤에 징계 처분(주로 교내봉사)이 되는 최소 별점의 몇%에 해당하는지 적는다.

위반사항에 따라 별점이 다르다면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는다.

예를 들어, 길이 위반에 별점 3점, 염색에 별점 5점이고 적발 때마다 별점이 2배로 늘어난다면

별점 50점에 교내봉사일 경우 5(10%)/10(20%)/20(40%)/...

※ 겨울에 외투 허용 등 복장 규제에도 예외로 보이는 것이 있으나, 두발규제와는 달리 특정 기간 한해 일부분만 허용되는 것이다.

두발규제와는 달리 완전히 용모·복장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없으므로 예외 규정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 학교의 해석에 따라 '교복을 단정히 입어야 한다' 나 '교복을 변형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내용이 장신구, 모자, 명찰, 가방, 보온 등을 폭넓게 규제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특히 벡타이의 경우 이 문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아 점검 기준에 넣지 않았다.)

교복 변형을 막지 않는 곳은 세 곳 뿐이다.

17개 학교 중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재원고등학교 외에는 모두 교복의 변형을 금지하고 있다.

4개 학교에서만 보온을 위한 외투, 목도리, 장갑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17개 학교 중 보온을 위한 외투, 목도리, 장갑 등 보온용품을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서라벌고등학교, 인덕공업고등학교 뿐이었다. 그 외에는 보온용품의 디자인이나 색을 제한하거나, 실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정해진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제한 사항이 있었다.

3개의 학교에서 모자를 규제하고 있다.

17개 학교 중 모자를 규제하는 학교는 총 세 곳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수락고등학교, 혜성여자고등학교였다.

한 곳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장신구를 제한하고 있다.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를 제외한 16곳의 학교 학칙에서 장신구를 제한하는 조항이 발견되었다. '일체의 악세서리를 금지한다' 라고만 적혀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금지하는 장신구의 종류를 일일이 나열한 학교도 있다.

17곳 중 14곳이 명찰을 강제한다.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서라벌고등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의 학칙에서 명찰을 강제하는 조항을 발견했다. 하지만, 명찰 강제가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바느질로 교복 위에 명찰을 박아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명찰을 패용해야한다고만 나와있을 뿐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적혀있지 않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17개의 학교 중 13개 학교에서 가방을 자유롭게 고를 수 없다.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불암고등학교, 서라벌고등학교,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외에는 모두 가방에 대해 규제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크기나 색, 가격을 제한하고 소위 '학생용 책가방' 을 사용하라는 것 정도이며, 청원여자고등학교의 경우는 아예 학교에서 가방의 디자인을 전부 정해 모두가 같은 가방을 쓰도록 하고 있다.

한 곳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신발을 규제하고 있다.

서라벌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신발을 규제하고 있다. 그중 상당수는 실내에서 신는 신발을 제한하고 더 나아가 통일시키기도 한다. 그 외에도 신발의 가격과 디자인을 제한하기도 하고, 신발을 꺾어 신거나 신발끈을 제거하지 말라고 하는 등 신발을 신는 방법을 제한한 학교도 있다.

다섯 곳의 학교에서 양말을 규제하고 있다.

신발에 비해서 양말을 규제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조사 결과, 양말을 규제하는 학교는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용화여자고등학교, 월계고등학교, 인덕공업고등학교, 혜성여자고등학교이다. 대부분 단순히 양말을 착용해야 한다고만 되어있고, 혜성여자고등학교는 타이즈에 색을 맞추라고 하고 있다.

17개 중 6개 학교에서 속옷을 규제하고 있다.

속옷의 규제 내용으로는 '내의를 꼭 착용하여 여성다움을 유지한다' 는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처럼 착용 방법을 지정한 경우 그리고 색이나 무늬가 있는 내복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기타 학생의 신체에 대한 규제를 하는 학교가 17곳 중 14곳에 이른다.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서라벌고등학교, 재현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는 학생의 신체에 대해 규제한다.

여기서 신체에 대한 규제란 수염, 손톱(매니큐어 등), 피부(문신, 화장 등), 눈썹(속눈썹 연장, 그리기 등), 눈(컬러렌즈 등) 등 신체에 색을 입히거나 변형시키는 것에 대한 규제를 의미한다. 수염과 손톱은 단정히 깎는다는 내용, 화장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제일 빈번했다. 문신의 경우는 타인에게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다른 규제와 달리 징계거리로 좀 더 심각하게 다루졌다.

13개 중 6개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바지를 허용하고 있다.

남학교가 아닌 13개 학교 중 6개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바지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에는 학교장 등 타인의 허락을 받거나, 여름철처럼 일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17개 모든 학교에서 용모와 복장에 대한 학교의 관점을 드러냈다.

17개 중 17개 학교 전부가 용모와 복장에 대한 학교의 관점을 드러냈다. 위와 마찬가지로, 용모 및 복장 규제에서도 학교의 관점을 크게 친사회적, 학생다움, 검소함으로 나누었다. 두발 규제와 비교해봤을 때, 친사회적이어야 한다는 관점은 많이 드러나지 않은 반면 학생다워야 한다는 관점이나 검소해야 한다는 관점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드러났다. 17개 중 3개 학교에서 학생의 용모 및 복장이 친사회적이어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냈다. 17개 중 12개 학교에서 학생의 용모 및 복장이 학생다워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냈다. 17개 중 15개 학교에서 학생의 용모 및 복장이 검소해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냈다.

용의복장규제에 벌점이 없는 학교는 없다.

14개 학교 중 용의복장규제 위반에 벌점을 정하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다. 벌점의 평균은 약 5점이었으며, 약 9번 가장 위반했을 때 징계가 내려졌다. 단, 벌점 없이 선도규제만 있는 경우나 벌점 몇점에 징계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계산에서 제외했다. 가장 벌점 부담이 큰 학교는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와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상명고등학교로, 모두 두 번만 벌점을 받으면 징계처분이 된다.

3. 사생활의 자유

| | 경기기계공업 고등학교 | 광운전자공업 고등학교 | 대진고등학교 | 동산정보산업 고등학교 | 미래산업고등 학교 | 불암고등학교 |
|----------------|------------------|------------------|--------|----------------|--------------|--------|
| 소지품 검사의 최소성 | X ³³⁾ | △ ³⁴⁾ | ? | ? | ? | ? |
| 압수별 | 0(휴대폰) | X | X | X | X | X |
| 전자기기 압수 | ? ³⁵⁾ | X | 30 | 7/14/30 | X | 7 |
| 용모규제 압수 | X | X | X | X | X | X |
| 폐기처분 | X | X | X | X | X | X |
| 안전상 압수 | X | 0 | X | X | X | X |

| | 상명고등학교 | 서라벌고등학 교 | 수락고등학교 | 영광여자메디 텍고등학교 | 영신여자고등 학교 | 용화여자고등 학교 |
|----------------|--------|----------------------|---|-----------------------|--------------|----------------|
| 소지품 검사의 최소성 | ? | 0 | ? | ? | ? | ? |
| 압수별 | X | X | X | X | X | X |
| 전자기기 압수 | X | 보호자자율 ³⁶⁾ | 7/14/30 | 7/30/? ³⁷⁾ | X | X |
| 용모규제 압수 | X | | 7 ³⁸⁾ 7/14/30 ³⁹⁾ | X | X | 14(복장, 장신구,기타) |
| 폐기처분 | X | X | 0 | X | X | 0 |
| 안전상 압수 | X | 0 | X | X | X | X |

33) 불가피한 경우에 학급 담임 교사와 생활교육부의 협의 하에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4) 소지품 검사에서 학생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임명 하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에도 거부하면 검사 실시 및 거부 사유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선도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이 부분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소지품 검사 사유가 학내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소지품 검사의 범위가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다.

35)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는 몇몇 교칙 위반시 지도 기간동안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위반 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압수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가 임의로 압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 | 월계고등학교 | 인덕공업고등학교 | 재현고등학교 | 청원여자고등학교 | 해성여자고등학교 |
|-------------|--|---------------------------|---------|----------|---------------------------|
| 소지품 검사의 최소성 | △40) | ? | ? | ? | ? |
| 압수별 | X | X | X | X | X |
| 전자기기 압수 | 14 ⁴¹⁾ /21/?(소지) ⁴²⁾ | 7/14/21/30 ⁴³⁾ | 7/14/21 | 7/14/30 | 7/14/21/28 ⁴⁴⁾ |
| 용모규제 압수 | X | X | X | X | X |
| 폐기처분 | X | X | X | X | X |
| 안전상 압수 | X | X | X | X | X |

〈점검기준〉

검사의 최소성

소지품 검사 절차가 명시된 학칙 중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소지품 검사의 조건(학생 당사자의 동의절차⁴⁵⁾ 준수 검사 범위 최소화, 일괄 검사 금지, 합리적 근거 없는 검사 금지)이 모두 있는 경우 (O)
일부 있는 경우 (△)/ 전혀 없거나 반대 내용이 있는 경우 (X) /소지품 검사 절차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압수별

규제의 내용을 어겼을 때 해당 내용과 관련 없는 소지품을 압수하는 경우
(예를 들어, 두발 규정을 몇 회 이상 어겼을 때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경우)가 있으면 압수하는 소지품을 적고 그렇지 않은 경우 (X)

전자기기압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규제를 어겼을 때 해당 전자기기를 압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최대 압수 기간(일)을 적으며, 압수 횟수에 따라 달라지면 /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1회 압수에 7일, 2회 압수에 14일, 3회 압수에 21일이면 7/14/21)
그렇지 않을 경우 (X). 한 달은 30으로 적는다.

용모규제압수

두발, 복장 등 용모 규제를 어겼을 때 해당 물품을 압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최대 압수기간(일)을 적고 괄호 안에 품목을 적는다
(예를 들어, 귀걸이를 착용하면 7일 압수할 시 7(귀걸이)). 그렇지 않을 경우 (X). 한 달은 30으로 적는다.

폐기처분

압수한 소지품을 폐기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O)/ 그렇지 않을 경우 (X)

안전상 압수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압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O)/ 그렇지 않을 경우 (X)
(※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며, 이곳에서 다루는 것은 소지품 검사 및 압수의 일부에 해당하는 핸드폰 검사 및 압수의 내용으로 한정한다.)

- 36) 서라벌고등학교는 학생생활규정에 위반된 물품을 교사의 판단에 따라 압수하여 보호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압수 물품이 반환되는 날씨는 보호자의 처분에 달려있다. 학생생활규정에는 두발, 교복, 장신구, 전자기기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37) 영광여자매디텍고등학교는 핸드폰 3회 이상 적발시에 학생선도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지만, 학생선도규정에서 핸드폰에 대해 따로 다루지는 않았다. 맥락상 3회 이상 적발시 선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는 것으로 보이며, 징계와 압수가 병행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38) 장신구, 모자, 화장품, 미용렌즈, 속눈썹의 경우.
- 39) 핸드폰의 경우. 반환 시에 학부모가 내교하여 휴대폰 사용 규정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한 후에 직접 수령해야 한다.
- 40) 소지품 검사에서 학생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임회 하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에도 거부하면 검사 실시 및 거부 사유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선도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이 부분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소지품 검사 사유가 학내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다.
- 41) 단 시험 중에는 30
- 42) “교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고 되어있다. 적절한 지도에 압수가 포함될 여지가 있다.
- 43) “부모님의 각서를 받고 학생에게 돌려준다” 라고 되어있어, 각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압수 기간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 44) 4회 적발시엔 추가로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해지를 권고한다.
- 45) 안전상 긴급한 경우 제외

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한 소지품 검사의 조건을 준수하는 학교는 한 곳 뿐이다.

소지품 검사를 할 때 학생 당사자의 동의를 거치고, 검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괄 검사를 하지 않고, 합리적 근거 없는 검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된 학교는 서라벌고등학교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학교는 소지품 검사의 절차가 나와있지 않았으며, 두 학교에서는 필요한 조건의 일부만 명시되어 있었다.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는 오히려 불가피한 경우에 학급 담임 교사와 생활교육부의 협의 하에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는 ‘압수별’ 을 시행하고 있다.

압수별이란, 위에서 언급한 ‘두발별’ 과 비슷하게 휴대폰 규정 자체와 상관없이 별도로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는 용의복장 불량, 교내외 흡연, 기타 교칙을 위반하여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 휴대폰을 지도 기간동안 압수하여 지도할 수 있다.

17개 중 12개 학교에서 전자기기를 압수한다.

17개 중 12개 학교에서 전자기기를 압수한다. 서라벌고등학교는 친권자(부모)에게 전자기기를 돌려준다.

다른 학교는 적발 횟수에 따라 압수 기간을 일주일 씩 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 3회차때는 한 달을 압수하는 경우도 많다.

인덕공업고등학교는 휴대폰 압수 시 부모의 각서를 받은 뒤에 학생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압수 기간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혜성여자고등학교는 4회 적발시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해지를 권고한다.

가장 적발기간이 긴 것은 대진고등학교로, 적발시 횟수에 상관없이 한 달간 압수한다.

세 학교에서 용의·복장 규제를 어겼을 때 해당 물품을 압수한다.

서라벌고등학교, 수락고등학교, 용화여자고등학교에서는 용의·복장 규제를 어겼을 때 해당 물품을 압수한다.

서라벌고등학교는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물품을 교사의 판단에 따라 압수할 수 있다고 폭넓은 압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수락고등학교는 장신구, 모자, 색조 화장품, 미용렌즈, 붙이는 속눈썹 및 마스크라, 아이라이너 등을 압수한다.

용화여자고등학교는 좀 더 포괄적으로 복장, 장신구, 기타물품 등 학생신분에 어긋나고 교육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생활지도 규정에 어긋난 것을 압수한다.

수락고등학교와 용화여자고등학교는 압수한 물품을 폐기처분할 수 있다.

수락고등학교는 압수한 물품을 일주일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처분한다.

압수한 물품을 찾아가려면 학부모가 일주일 이내에 학교에 방문해 용의복장 규정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한 후에 직접 수령해야 한다.

용화여자고등학교는 압수한 물품을 일정 기간(최대 2주일) 보관한 후 돌려주거나

일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폐기처분 할 수도 있다.

압수한 물품을 반환할지 폐기처분할지를 누가 결정하는지, 폐기처분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두 군데의 학교에서 안전상 긴급한 경우에 압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서라벌고등학교에서 안전상 긴급한 경우에 압수할 수 있다고 학칙에 명시했다.

이 두 학교는 모두 소지품 검사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어느 정도 명시해놓은 곳이다.

다른 곳은 안전상 압수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 | 경기기계공업 고등학교 | 광운전자공업 고등학교 | 대진고등학교 | 동산정보산업 고등학교 | 미래산업고등 학교 | 불암고등학교 |
|-------|----------------|-----------------------|----------------------|-------------------|-----------------------|----------------------------|
| 규제강도 | XX | X ⁴⁶⁾ | XX | XX ⁴⁷⁾ | X | XX |
| 별점 | 2(20%) | 10(50%)/(100%) 48) | 2(13%)/(100%) 49) | 5(13%) | /(25%) ⁵⁰⁾ | 5(25%)/10(50%) /15(75%) |
| 압수 | X | X | 30 | 7/14/30 | X | 7/14/21 |
| 수거&반환 | 0 | X | 0 | 0 | X | 0 |

46)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는 “교실에서는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가방 속 또는 사물함에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밖에 쉬는시간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이 내용이 쉬는시간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X로 표시했다.

| | 상명고등학교 | 서라벌고등학교 | 대진고등학교 수락고등학교 | 염광여자메디 텍고등학교 | 영신여자고등 학교 | 용화여자고등 학교 |
|-------|------------------|------------------|------------------------|-----------------------|------------------------|------------------|
| 규제강도 | X | X | XX | XX | X ⁵¹⁾ | XX |
| 별점 | 2(10%) | 3(60%) | 5(25%) | 10(20%) | /(100%) ⁵²⁾ | 3(-)/4(-)/5(-) |
| 압수 | 14 | ? ⁵³⁾ | 7/14/30 ⁵⁴⁾ | 7/30/? ⁵⁵⁾ | X | 0 ⁵⁶⁾ |
| 수거&반환 | ? ⁵⁷⁾ | X | X | 0 | X | 0 |

| | 경기기계공업 고등학교 | 광운전자공업 고등학교 | 대진고등학교 | 동산정보산업 고등학교 | 미래산업고등 학교 |
|-------|-------------------------|---------------------------|---------|----------------|--------------|
| 규제강도 | XX ⁵⁸⁾ | XX | X | 0 | XX |
| 별점 | 5(25%) | ? ⁵⁹⁾ | 3(15%) | 2(10%) | 1(7%) |
| 압수 | 14/21, ? ⁶⁰⁾ | 7/14/21/30 ⁶¹⁾ | 7/14/21 | 7/14/30 | 7/14/21/28 |
| 수거&반환 | X | X | X | X | 0 |

〈점검기준〉

규제강도

학생들이 휴대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

(모든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여 학교에 돌려주는 것, 일과중에 소지할 수 없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XX)

학생들이 휴대폰 소지는 할 수 있어도 항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희망하는 학생에게만 휴대폰을 수거하고 학교에 돌려주는 것, 일과중에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X)

휴대전화 소지가 가능하고 수업시간에만 휴대폰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O)

휴대폰 소지 및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 (OO). 단, 시험시간의 규제는 제외한다.

별점

휴대폰 규제에 의한 별점 중 가장 높은 별점을 적은 뒤, 괄호 안에 최소 징계 별점의 몇%에 해당하는지 적는다.

별점 항목이 없을 경우 ‘-’ 로 기재한다. 위반 횟수에 따라 별점이 달라질 경우 따로 적는다.

예를 들어, 휴대폰 소지에 별점 3점, 수업중 사용에 별점 5점이고 적발 때마다 별점이 2배로 늘어난다면

별점 50점에 교내봉사일 경우 5(10%)/10(20%)/20(4 0%)/... 단, 시험시간의 규제는 제외한다.

압수

휴대폰 규제에 따르지 않았을 때 휴대폰을 압수하는 경우 압수 기간(일, 한 달은 30)을 명시한다.

위반 횟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경우 따로 적는다.

예를 들어 처음 위반했을 때 7일 압수고 위반할 때마다 7일씩 늘어난다면 7/14/21/...

압수하지 않는 경우 X. 별점규정이나 선도규정을 확보하지 못해 별점이나 징계처분이 되는 최소별점을 알 수 없는 경우 -.

47)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는 명목상으로는 “담임교사 입회하에 자율적으로 수거하여” 라고 되어 있으나, 동시에 “보관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가 적발(쉬는 시간, 점심시간, 수업시간) 시” 를 규제 범위로 하고있어 실질적으로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48) 상별점제와 별개로 선도규정에서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조작한 학생과 교실에서 휴대폰을 충전한 학생에게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되어있다.

49) 상별점제와 별개로 선도규정에서 수업 중 통신기기를 반복하여 사용한 학생에게 교내봉사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되어있다.

50)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는 상별점규정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학생생활지도규정에서 4회 적발시 선도위원회가 개회되고 출석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51) 영신여자고등학교는 “교내에서 개인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다. 그밖에 쉬는시간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이 내용이 쉬는시간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X로 표시했다.

52) 영신여자고등학교는 상별점규정이 확보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선도규정에는 “수업시간에 휴대용 전화기로 장난(가지고 있는 것 포함, 음성, 문자, 벨소리)하는 학생” 에게 학교내봉사 징계를 내린다고 규정되어있다.

53) 교육활동 시간에 모든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를 일시 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일시’ 의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54) 학부모가 내교하여 휴대폰 사용 규정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해야 휴대폰을 반환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절차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압수 기간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55)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는 핸드폰 3회 이상 적발시에 학생선도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지만, 학생선도규정에서 핸드폰에 대해 따로 다루지는 않았다. 맥락상 3회 이상 적발시 선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는 것으로 보이며, 징계와 압수가 병행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56) "적절한 담당 교사가 휴대전화를 7교시까지 보관후, 학생에게 돌려준다. "

57)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 금지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인성교육부와 학년부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수거&반환이 명시되어 있다. 그 외에는 아이스마트키퍼가 명시되어 있다.

58) 학칙에서 대부분 휴대폰 '사용' 을 금지한다고만 되어있을 뿐 소지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타 휴대폰 소지 중 적발된 경우 교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어 교사의 재량에 따라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59) 위반 때마다 지도증이 발급되며 지도증이 5회 누적되면 성찰 푸른교실에 입실하거나 상황에 따라 선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60) "기타 휴대폰 소지 중 적발 된 경우 교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고 되어있어 교사의 재량에 따라 압수 여부, 기간 등이 결정될 여지가 있다.

61) 부모의 각서를 받고 학생에게 돌려주므로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압수 기간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수거&반환

등교시간에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하교시간에 돌려주는 휴대폰 수거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제출을 강제로 하는지, 학생의 자발성에 맡기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해당 원칙에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교사 등에게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한다'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학교는 한 곳밖에 없다.

청원여자고등학교를 제외한 16개 학교는 모두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거나 막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었다.

특히 17개중 10개 학교는 모든 휴대전화를 수합하는 등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했다.

모든 학교가 휴대폰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거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휴대폰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학교는 아무도 없었다.

휴대폰 규정을 어긴 경우 평균 5점의 벌점이 매겨지며, 약 6회 적발된 경우 징계가 매겨진다.

단, 벌점 없이 선도규정에만 있는 경우나 벌점 몇 점에 징계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계산에서 제외했다.

가장 벌점의 압박이 큰 곳은 **서라벌고등학교**로,

한 번 걸렸을 때 쌓이는 벌점이 징계가 되는 벌점 기준의 60%에 육박한다.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역시 두 번 걸리면 징계가 내려진다.

7개의 학교에서 등교 때 휴대폰을 수거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7개 중 7개 학교에서 등교 때 휴대폰을 수거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강제 수거와 학생 자율 수거를 모두 합한 숫자이다.

단 **상명고등학교**는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 금지하는 규제 방안을

인성교육부와 학년부가 협의해서 결정한다고만 되어있어, 매년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4. 의사표현의 자유

| | 경기기계공업 고등학교 | 광운전자공업 고등학교 | 대진고등학교 | 동산정보산업 고등학교 | 미래산업고등 학교 | 불암고등학교 |
|---------|----------------|----------------|----------------------------|----------------|--------------|---------|
| 수업 거부 | 3,4,5 | 1,2,3 | 2,3 | X | - | 2,3,4 |
| 시험 거부 | 2,3,4,5 | 2,3 | 2,3 | 3,4 | - | X |
| 백지 동맹 | X | 2,3,5 | X | X | - | X |
| 등교 거부 | X | 3,5 | 2,3 | 3,4,5 | - | X |
| 불법 집회 | 1,2,3 | 1,2,3 | 1,2,3 | 1,3,4,5 | - | 1,2,3,4 |
| 불법 단체 | 1,2,3 | 1,2,3 | 1,2,3,(4,5) ⁶²⁾ | 1,3,4,5 | - | 1,2,3,4 |
| 집회 조건 | X | X | X | X | - | 0 |
| 조건/학생다움 | 0 | 0 | X | 0 | - | X |
| 선동 | 2,3,4,5 | 2,3,5 | 2,3,4,5 | 1,3,4 | - | 2,3,4,5 |
| 정치 관여 | 2,3,4,5 | 2,3,5 | X | 4,5 | - | X |

| | 상명고등학교 ⁶³⁾ | 서라벌고등학 교 | 수락고등학교 | 염광여자메디 텍고등학교 | 영신여자고등 학교 | 용화여자고등 학교 |
|---------|--------------------------|----------------------------|---------|-----------------|--------------|--------------|
| 수업 거부 | 1,2,3 | (1),2,3,4,5 ⁶⁴⁾ | 1,2,3 | 1,2,3 | 1,2,3 | 1,2,3 |
| 시험 거부 | 3 | (1),2,3,4,5 | 1,2,3,5 | 2,3 | 2,3 | 2,3 |
| 백지 동맹 | 2,3 | X | X | 2,3 | 2,3 | X |
| 등교 거부 | 2,3,4,5 | 1,2,3,4,5 | X | 2,3,5 | X | X |
| 불법 집회 | 1,2,3 | 1,2,3,4 | 1,2,3,5 | 1,2,3 | 1,2,3 | 1,2,3 |
| 불법 단체 | 1,2,3 | 1,2,3,4 | 1,2,3,5 | 1,2,3 | 1,2,3 | 1,2,3 |
| 집회 조건 | X | X | X | X | X | X |
| 조건/학생다움 | X | X | 0 | 0 | 0 | 0 |
| 선동 | 2,3,4,5 | 1,2,3,4,5 | 1,2,3,5 | 2,3,5 | 2,3,5 | X |
| 정치 관여 | X | X | 1,2,3,5 | 3,5 | 3,5 | 3,4,5 |

62) 서클을 조직, 운영한 사람에게는 출석정지, 퇴학까지 범위가 늘어난다.

63) 상명고등학교는 흔히 강제전학이라고 하는 '전학공고'가 학칙에 징계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전학공고 징계가 가능한 경우는 모두 퇴학도 가능하므로, 전학공고를 퇴학에

| | 월계고등학교 | 인덕공업고등 학교 ⁶⁵⁾ | 재현고등학교 | 청원여자고등 학교 | 혜성여자고등 학교 |
|---------|-----------|-----------------------------|---------|--------------|--------------------------|
| 수업 거부 | 1,2,3,4,5 | - | 1,2 | X | X |
| 시험 거부 | 2,3,4 | - | 2,3,4 | 3,5 | X |
| 백지 동맹 | 2,3,4,5 | - | X | X | 1,2,3,4,5 ⁶⁶⁾ |
| 등교 거부 | 2,3,4,5 | - | X | X | 1,2,3,4,5 ⁶⁷⁾ |
| 불법 집회 | 1,2,3,4 | - | 1,2,3 | 2,3 | 1,2,3 |
| 불법 단체 | 1,2,3,4 | - | 1,2,3 | 2,3 | 1,2,3 |
| 집회 조건 | X | - | X | X | X |
| 조건/학생다움 | 0 | - | X | 0 | 0 |
| 선동 | 2,3,4,5 | - | 1,2,3,4 | 2,3,5 | 1,2,3,4,5 ⁶⁸⁾ |
| 정치 관여 | 3,4,5 | - | X | 3,5 | 2,3,5 |

〈점검기준〉

수업거부

수업 거부를 주도하거나 참여하거나 선동한 학생을 징계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 수위에 따라 숫자를 기록한다(교내봉사 1, 사회봉사 2, 특별교육 3, 등교정지 4, 퇴학 5)/ 없는 경우 (X)

시험거부

시험 거부를 주도하거나 참여하거나 선동한 학생을 징계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 수위에 따라 숫자를 기록한다(교내봉사 1, 사회봉사 2, 특별교육 3, 등교정지 4, 퇴학 5)/ 없는 경우 (X)

백지동맹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참여하거나 선동한 학생을 징계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 수위에 따라 숫자를 기록한다(교내봉사 1, 사회봉사 2, 특별교육 3, 등교정지 4, 퇴학 5)/ 없는 경우 (X)

등교거부

등교거부 또는 동맹휴학을 주도하거나 참여하거나 선동한 학생을 징계하는 조항이 있는 조항이 경우
징계 수위에 따라 숫자를 기록한다(교내봉사 1, 사회봉사 2, 특별교육 3, 등교정지 4, 퇴학 5)/ 없는 경우 (X)

불법집회

불법집회에 참석한 학생을 징계하는 조항이 있는 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 수위에 따라 숫자를 기록한다
(교내봉사 1, 사회봉사 2, 특별교육 3, 등교정지 4, 퇴학 5)/ 없는 경우 (X)

불법단체

불량써클, 단체 등에 가입한 학생을 징계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 수위에 따라 숫자를 기록한다
(교내봉사 1, 사회봉사 2, 특별교육 3, 등교정지 4, 퇴학 5)/ 없는 경우 (X)

정치관여

정치에 관여한 학생을 징계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 수위에 따라 숫자를 기록한다
(교내봉사 1, 사회봉사 2, 특별교육 3, 등교정지 4, 퇴학 5)/ 없는 경우 (X)

집회조건

학생집회를 허가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등
학생 집회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여지가 있는 경우 (O)/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경우 (X)

조건 - 학생다움

·학생다움 ·학생 신분에 부적절한 등
학생 계층의 특수성을 규제의 자세한 내용으로 언급한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포함시켜 표시한다.

64) 서라벌고등학교는 교육활동을 무단으로 거부한 사람은 최소 교내봉사, 거부를 주도 및 선동한 사람은 최소 사회봉사로 징계의 수위가 규정되어 있다.

65) 인덕공업고등학교는 학생인권조례 중 집회에 대한 조항이 학생 인권 보호 규정으로 학칙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선도규정이 확보되지 않아 집회가 학칙 상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알 수 없으므로, 학생 인권 보호 규정의 내용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지 않았다.

66) 이외에도 학급교체, 전학이 가능하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처리 규정에 명시되어있다.

67) 4)와 같다.

68) 4)와 같다.

선동

포괄적으로 타인을 선동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을 징계하는 조항이 있는 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 수위에 따라 숫자를 기록한다(교내봉사 1, 사회봉사 2, 특별교육 3, 등교정지 4, 퇴학 5)/ 없는 경우 (X)

정치관여

정치에 관여한 학생을 징계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 수위에 따라 숫자를 기록한다
(교내봉사 1, 사회봉사 2, 특별교육 3, 등교정지 4, 퇴학 5)/ 없는 경우 (X)

※ 상당수 학교에서 학교생활규정 등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담임·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여기서 학생의 회합에는 넓게 보면 집회가 포함될 수도 있으나,
이를 집회 허가 조항으로 해석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에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내용은 학생자치활동 제한 조사결과에서 다룬다.

12개의 학교에서 수업을 거부한 학생을 징계한다.

15개의 학교 중 12개의 학교에서 수업을 거부한 학생을 징계한다.
학교에 따라 가볍게는 교내봉사~사회봉사의 범위로 하며, 무겁게는 퇴학까지 가능하다.

13개의 학교에서 시험을 거부한 학생을 징계한다.

15개의 학교 중 13개의 학교에서 시험을 거부한 학생을 징계한다.
학교에 따라 가볍게는 사회봉사~특별교육의 범위로 하며, 무겁게는 퇴학까지 가능하다.

6개의 학교에서 백지동맹을 주동하거나 찬동한 학생을 징계한다.

15개의 학교 중 6개의 학교에서 백지동맹을 주동하거나 찬동한 학생을 징계한다.
징계의 범위는 대부분 사회봉사~등교정지 선이며, 무겁게는 퇴학까지 가능하다.
혜성여자고등학교는 특이하게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처리 규정에서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8개의 학교에서 등교를 거부한 학생을 징계한다.

15개의 학교 중 8개의 학교에서 등교를 거부한 학생을 징계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퇴학이 징계범위 내에 들어갈 정도로 무겁게 처리한다.
혜성여자고등학교는 특이하게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처리 규정에서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모든 학교가 불법 집회에 참석한 학생을 징계한다.

15개의 학교 전부가 불법 집회에 참석한 학생을 징계한다.
그 수위는 대부분 교내봉사~특별교육이며, 몇몇 학교는 등교정지나 퇴학까지도 징계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모든 학교가 불법 단체에 참여한 학생을 징계한다.

15개의 학교 전부가 불법 단체 또는 서클에 참여한 학생을 징계한다.
집회와 마찬가지로 수위는 대부분 교내봉사~특별교육이며, 몇몇 학교는 등교정지나 퇴학에 이르기도 한다.

한 학교 빼고는 학생집회가 허가되는 조건을 명시한 곳이 없다.

불암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15개 학교 중에서 학생집회가 허가되는 조건을 명시한 곳이 없다.
불암고등학교는 아래와 같이 학생집회의 조건을 달았다.

-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교내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집회를 제한한다.
- 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집회를 할 수 없다.
 - ② 집회 중에 과격하고 폭력적인 집회를 할 수 없다.

10개의 학교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학교의 인식을 드러냈다.

15개의 학교 중 10개의 학교에서 학칙으로 집회 등 집단행동 규제에 대한 학교의 인식을 드러냈다. 이들 학교는 아래와 같은 징계조항으로 정치권여가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정치 활동에 관여하여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한 곳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타인을 선동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학생을 징계하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다.

15개 학교 중 14개의 학교에서 수업·시험거부 등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도 타인을 선동하여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 중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와 재현고등학교를 뺀 나머지 12개 학교는 모두 징계 범위에 퇴학이 포함되어 있었다. 혜성여자고등학교는 특이하게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처리 규정에서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10개의 학교에서 정치에 관여한 학생을 징계하는 조항이 있다.

15개 학교 중 10개의 학교에서 정치에 관여한 학생을 징계하는 조항이 있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은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학교와 정확히 일치한다.

5. 자치활동의 권리

| | 경기기계공업 고등학교 | 광운전자공업 고등학교 | 대진고등학교 | 동산정보산업 고등학교 | 미래산업고등 학교 | 불암고등학교 |
|--------|----------------|----------------|----------|----------------|--------------|------------|
| 조건/ 모범 | 0 | - | 0 | - | - | 0 |
| 조건/ 징계 | 0 (징계유급처벌) | - | 0 (교내봉사) | - | - | 0 (징계, 20) |
| 조건/ 성적 | X | - | X | - | - | X |
| 즉시 면직 | X | - | 0 | - | - | 0 |

| | 상명고등학교 69) | 서라벌고등학 교 | 수락고등학교 | 염광여자메디 텍고등학교 | 영신여자고등 학교 | 용화여자고등 학교 |
|--------|---------------|-------------|-----------|-----------------|--------------|--------------|
| 조건/ 모범 | 0 | - | 0 | - | - | - |
| 조건/ 징계 | 0 (교내봉사,20) | - | 0 (징계,10) | - | - | - |
| 조건/ 성적 | X | - | X | - | - | - |
| 즉시 면직 | 0 | - | 0 | - | - | - |

| | 월계고등학교 | 인덕공업고등 학교 | 재현고등학교 | 청원여자고등 학교 | 혜성여자고등 학교 |
|--------|--------|--------------|-------------|--------------|----------------------|
| 조건/ 모범 | - | - | 0 | - | 0 |
| 조건/ 징계 | - | - | 0 (교내봉사,10) | - | 0 (교정교육, 교내봉사) |
| 조건/ 성적 | - | - | 0 (평균4등급) | - | 0 |
| 즉시 면직 | - | - | 0 | - | 0 |

<점검기준>

조건/ 모범

학생자치조직 구성원 및 대표자 자격에 '품행이 바르다' '성실하다' '모범이 된다' 등 모범성으로 제한을 둔 경우 (O) 그렇지 않을 경우 (X)/ 단, 학업 및 성적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한다.

조건/ 징계

학생자치조직 대표자 자격에 '벌점 몇 점 이하', '징계 기록 없음' 등 벌점 및 징계 횟수로 제한을 둔 경우 (O) (제한기준, 벌점) 그렇지 않을 경우 (X)/ 단, 구체적 기준 없이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는 언급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건/ 성적

학생자치조직 대표자 자격에 성적으로 제한을 둔 경우 (O) (제한기준) 그렇지 않을 경우 (X)/ '학업이 우수하다' 등 학업 및 성적과 관련된 내용이면 모두 포함한다.

69) 상명고등학교는 흔히 강제전학이라고 하는 '전학공고' 가 학칙에 징계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전학공고 징계가 가능한 경우는 모두 퇴학도 가능하므로, 전학공고를 퇴학에 포함시켜 표시한다.

즉시 면직

학생자치조직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 이후에 자격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시에 즉시 면직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모든 학교에서 학생자치조직 구성원 및 대표자 자격에 모범성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7개 학교 전부 학생자치조직 구성원 및 대표자 자격에 모범성으로 제한을 두었다.

모든 학교에서 학생자치조직 대표자 자격에 징계로 제한을 두고 있다.

7개 학교 전부 학생자치조직 대표자 자격에 징계로 제한을 두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내봉사 징계를 받는 사람이 대표자 후보로 나설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한 학교 빼고는 모두 대표자가 징계를 받으면 즉시 면직된다.

7개 학교 중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는 대표자가 징계를 받으면 즉시 면직하여 대표자 권한 및 직위를 박탈하도록 되어있다.

두 학교에서 학생자치조직 대표자 자격에 성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7개 학교 중 재현고등학교와 혜성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자치조직 대표자 자격에 성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혜성여자고등학교는 '학업에 충실하고' 정도로 추상적인 반면, 재현고등학교는 '평균 4등급 이상'으로 명확하게 정해놓았다.

| |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 대진고등학교 |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 미래산업고등학교 | 불암고등학교 |
|---------|------------|------------|-----------|----------------------|----------|---------|
| 사전통지 | X | X | X | X | - | X |
| 소명기회 | X | X | X | X | - | X |
| 의견수렴 | X | X | X | X | - | X |
| 불량서클징계 | 1,2,3 | 1,2,3 | 1,2,3 | 1,2,3,5 | - | 1,2,3,4 |
| 미허가조직징계 | 2,3,4,5 | 2,3,5 | 1,2,3,4,5 | 2,3,5 ⁷⁰⁾ | - | 2,3,4,5 |
| 회합허가제 | X | 0 | X | 0 | 0 | X |

| | 상명고등학교 ⁷¹⁾ | 서라벌고등학교 | 수락고등학교 |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 영신여자고등학교 | 용화여자고등학교 |
|---------|-----------------------|-----------|---------|-------------|-----------|----------|
| 사전통지 | X | X | X | X | X | X |
| 소명기회 | X | X | X | X | X | X |
| 의견수렴 | X | X | X | X | X | X |
| 불량서클징계 | 1,2,3 | 1,2,3,4 | 1,2,3 | 1,2,3 | 2,3,4 | 1,2,3 |
| 미허가조직징계 | 1,2,3,4,5 | 1,2,3,4,5 | 1,2,3,5 | 2,3,5 | 1,2,3,4,5 | 2,3,4,5 |
| 회합허가제 | X | 0 | X | X | 0 | X |

| | 월계고등학교 | 인덕공업고등학교 | 재현고등학교 | 청원여자고등학교 | 혜성여자고등학교 |
|---------|---------|----------|--------|----------|----------|
| 사전통지 | X | - | X | X | X |
| 소명기회 | X | - | X | X | X |
| 의견수렴 | X | - | X | X | X |
| 불량서클징계 | 1,2,3,4 | - | 1,2,3 | 1,2,3 | 1,2,3 |
| 미허가조직징계 | 2,3,4,5 | - | 1,2,3 | 2,3,5 | 2,3,5 |
| 회합허가제 | X | - | X | X | X |

<점검기준>

사전통지

학내 자치활동 금지·제한시 제한 사유에 대해 사전 통지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70)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는 불량서클, 허가 없는 서클 외에도 음성 서클에 가담한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등교정지 징계를 내리고 있다. 음성 서클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자세한 설명은 나와있지 않다.

71) 상명고등학교는 흔히 강제전학이라고 하는 '전학공고'가 학칙에 징계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전학공고 징계가 가능한 경우는 모두 퇴학도 가능하므로, 전학공고를 퇴학에 포함시켜 표시한다.

소명기회

학내 자치활동 금지·제한시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의견수렴

학내 자치활동 금지·제한시 학내자치조직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불량서클징계

불량서클·동아리에 참석·가입하는 것을 징계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징계 수위에 따라 숫자를 기록한다 (교내봉사 1, 사회봉사 2, 특별교육 3, 등교정지 4, 퇴학 5)/ 그렇지 않은 경우 (X)

미허가조직징계

허가 없이 서클·동아리를 조직·운영·참여하여 교칙이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을 징계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징계 수위에 따라 숫자를 기록한다 (교내봉사 1, 사회봉사 2, 특별교육 3, 등교정지 4, 퇴학 5)/ 그렇지 않은 경우 (X)

회합허가제

학생들이 교내에서 회합을 할 때 학교나 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O)/ 그렇지 않을 경우 (X)

※ 여기서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인권조례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에서 언급한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조직 기반 활동에 대해서만 다룬다.

예를 들어, 정치 관여, 포괄적 선동 금지 조항 역시 크게 보면 학생자치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집회 규제 및 금지에서도 다루고 있어 내용이 중복되며, 학생자치활동이 아닌 것도 이 내용을 이용해 포괄적으로 규제할 여지가 있다.그래서 여기서는 정치 관여 및 포괄적 선동 금지 조항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

어떤 학교도 학생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할 때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도록 절차로 규정하지 않았다.

15개 학교 모두가 학생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할 때 제한 사유에 대해 사전에 통지하거나, 소명 기회를 보장하거나, 이에 대한 학내자치조직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학칙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모든 학교가 불량서클·동아리에 참석·가입하는 학생을 징계한다.

15개 학교 모두가 불량 서클·동아리에 참석·가입하는 학생을 징계한다.

징계의 수위는 대부분 교내봉사~특별교육이며,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는 퇴학까지 가능하다.

모든 학교에 허가 없이 서클·동아리를 조직·운영·참여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을 징계하는 조항이 있다.

15개 학교 모두가 허가 없이 서클·동아리를 조직·운영·참여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을 징계하는 조항이 있다.

재현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이를 이유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5곳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회합을 할 때 학교나 교사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

16개 학교 중 5개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내에서 회합을 할 때 학교나 교사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교사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⑥ 외출 시 반드시 외출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6. 학칙 등 학교 규칙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 |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 대진고등학교 |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⁷²⁾ | 불암고등학교 |
|------|------------|------------|--------|------------|---------------------------|--------|
| 개성 | XXX | XXX | XX | XX | XX | X |
| 사생활 | XXX | XXX | XX | XXX | XX | X |
| 의사표현 | XXX | XXX | X | XXX | - | X |

| | 상명고등학교 | 서라벌고등학교 ⁷³⁾ | 수락고등학교 ⁷⁴⁾ | 염광여자메디텍고 등학교 | 영신여자고등학교 ⁷⁵⁾ | 용화여자고등학교 |
|------|-------------------|------------------------|-----------------------|-----------------|-------------------------|----------|
| 개성 | XXX | XX | XX | XXX | XXX | XXX |
| 사생활 | XXX | XX | XX | XXX | XXX | XXX |
| 의사표현 | XX ⁷⁶⁾ | XX | X | XX | XXX | XX |

| | 월계고등학교 | 인덕공업고등학교 ⁷⁷⁾ | 재현고등학교 ⁷⁸⁾ | 청원여자고등학교 | 혜성여자고등학교 |
|------|--------|-------------------------|-----------------------|----------|----------|
| 개성 | XXX | XXX | XXX | XXX | XXX |
| 사생활 | XXX | XXX | XXX | XX | XXX |
| 의사표현 | XX | - | XX | XX | XX |

〈점검기준〉

개성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제한하는 세부규정에서 해당 규정의 개정 절차로 학생 전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모두 명시한 경우 (O)
 학생 중 일부의 의견을 청취해야하는 규정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X)
 청취할 여지만 열어둔 규정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XX)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규정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XXX)
세부규정마다 다를 경우 X가 많은 쪽으로 표기한다

학내자치기구 중 학생회 외의 기구(동아리 등)까지 포괄할 여지를 남겨둔 경우 뒤에 +를 붙인다.

사생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제한하는 세부규정에서 해당 규정의 개정 절차로 학생 전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모두 명시한 경우 (O)
 학생 중 일부의 의견을 청취해야하는 규정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X)
 청취할 여지만 열어둔 규정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XX)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규정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XXX)
세부규정마다 다를 경우 X가 많은 쪽으로 표기한다

학내자치기구 중 학생회 외의 기구(동아리 등)까지 포괄할 여지를 남겨둔 경우 뒤에 +를 붙인다.

의사표현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제한하는 세부규정에서 해당 규정의 개정 절차로 학생 전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모두 명시한 경우 (O)
 학생 중 일부의 의견을 청취해야하는 규정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X)
 청취할 여지만 열어둔 규정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XX)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규정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XXX)
세부규정마다 다를 경우 X가 많은 쪽으로 표기한다

학내자치기구 중 학생회 외의 기구(동아리 등)까지 포괄할 여지를 남겨둔 경우 뒤에 +를 붙인다.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제한하도록 교칙이 바뀔 때, 학생 공청회를 여는 학교는 없다.

17개 학교 중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제한하도록 교칙이 바뀔 때 학생 공청회를 여는 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나마 학생 중 일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못박아둔 곳은 불암고등학교 뿐이었다.
 청취할 여지라도 열어둔 곳 역시 5곳 뿐이었으며,
 나머지 11개 학교는 모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72)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는 선도규정과 상벌점규정이 없어 반영하지 못했다.

73) 서라벌고등학교는 학생생활규정, 학생상벌점규정, 학생선도규정 모두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다. 다만 이 토론회가 학생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학생 대표만 참석 권한이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74) 수락고등학교는 학생선도 규정과 용의 복장 및 휴대폰 사용 규정 개정시 학생대표 3인이 규정개정소위원회에 구성원으로 들어간다. 다만 그린마일리지(상·별점제) 규정은 그렇지 않다.

75) 영신여자고등학교는 상벌점규정이 없어 반영하지 못했다.

76) '교직원회의 혹은 대의원총회' 라고 되어있어, 학생회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을 여지가 있다.

77) 인덕공업고등학교는 선도규정과 상벌점규정이 없어 반영하지 못했다.

78) 재현고등학교 선도규정은 규칙 제·개정시 학생 5인 이하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발언권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교칙이 바뀔 때, 학생 공청회를 여는 학교는 없다.

17개 학교 중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교칙이 바뀔 때 학생 공청회를 여는 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러나 학생 중 일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못박아둔 곳은 불암고등학교 뿐이었다. 청취할 여지라도 열어둔 곳 역시 5곳 뿐이었으며, 나머지 11개 학교는 모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교칙이 바뀔 때, 학생 공청회를 여는 학교는 없다.

15개 학교 중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교칙이 바뀔 때 학생 공청회를 여는 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러나 학생 중 일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못박아둔 곳은 불암고등학교, 대진고등학교, 수락고등학교 뿐이었다. 청취할 여지라도 열어둔 곳은 8곳이었고, 나머지 네 곳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세 결과의 공통점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학교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이다. 가장 학생의 의견을 많이 듣는 학교는 불암고등학교고, 그 다음은 대진고등학교나 수락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때 대부분 학생자치조직 대표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도 눈에 띈다. 학생회가 아닌 학생자치조직(동아리 등)에 대해 인지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7.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 대진고등학교 |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 미래산업고등학교 | 불암고등학교 |
|------|-------------------|------------|--------------------|------------|----------|--------|
| 사전통지 | X | X | X | X | X | X |
| 소명기회 | 00 ⁷⁹⁾ | 00 | 00 | 00 | 00 | 00 |
| 대리인 | X | X | X | X | X | X |
| 재심요청 | 0 X | 0 X | X X ⁸⁰⁾ | 00 | 00 | 00 |

| | 상명고등학교 | 서라벌고등학교 | 수락고등학교 |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 영신여자고등학교 | 용화여자고등학교 |
|------|--------|---------|--------|-------------|----------|----------|
| 사전통지 | X | X | X | X | X | X |
| 소명기회 | 00 | 00 | 00 | X0 | 00 | X0 |
| 대리인 | X | X | X | X | X | X |
| 재심요청 | 00 | 00 | 00 | 00 | 00 | 00 |

| | 월계고등학교 | 인덕공업고등학교 | 재현고등학교 | 청원여자고등학교 | 혜성여자고등학교 |
|------|--------|----------|--------|------------------|----------|
| 사전통지 | X | - | X | X | X |
| 소명기회 | 00 | - | 00 | 00 | 00 |
| 대리인 | X | - | X | X | X |
| 재심요청 | 00 | - | 00 | ? ⁸¹⁾ | 00 |

<점검기준>

사전 통지

징계 절차에서 학생에게 사전에 징계에 대해 통지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면 (O)/ 그렇지 않으면 (X)

소명기회

징계 절차에서 학생과 친권자에게 소명 기회를 모두 보장하면 (OO)
 부모, 친권자 등 주변 사람에게만 소명 기회를 보장하면 (XO)
 학생에게만 소명기회를 보장하면 (OX)/ 그렇지 않으면 (XX)

대리인

징계 절차에서 학생에게 대리인 선임권을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면 (O)/ 그렇지 않으면 (X)

79) 단, 선도위원회 소위원회는 필요하지 않을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80) 대진고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나,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있어 권리로서 보장해준다고 보기 어렵다.

81) 청원여자고등학교는 학생생활규정에 “학생 및 학부모는 선도처분 결과 통보이후 3일 이내에 선도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학교장은 재심을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재심 진행이 누구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명확하지 않다.

재심요청

징계 절차에서 재심 요청권을 학생에게도 친권자(부모 등)에게도 보장하지 않은 경우 (XX)
학생에게만 보장하고 친권자에게 보장하지 않은 경우 (OX)
학생에게 보장하지 않고 친권자에게만 보장한 경우 (XO)/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보장한 경우 (OO)
단, 퇴학의 경우는 담당부처가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넘어가므로 제외한다.

※ 학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징계 외에도 상벌점제가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4항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라고 되어있으며, 1항의 징계와 별도의 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상벌점제는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으로 규정되어있을 뿐 징계의 일부라 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단 학교도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 전 학생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해둔 곳이 없다.

16개 학교 중 단 학교도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 전 학생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해둔 곳이 없다.
단, 이 결과가 실제 현장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룰 것이다.

모든 학교에서 친권자 소명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은 그렇지 않다.

16개 학교 중 16개 학교 모두 징계 절차 중 친권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영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와 용화여자고등학교는 학생의 소명기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학생의 대리인 선임권을 보장해 주는 학교는 없다.

16개 학교 중 16개 학교 모두 학생의 대리인 선임권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한군데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재심요청권을 보장했다.

16개 학교 중 대진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징계 결과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 기한은 대부분 징계가 판결된지 사흘 내였다.
대진고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나,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있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다.

VI.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제안

1.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인권조례는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항에서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의 체벌에는 교육부가 허용했던 간접체벌이 포함된다.

즉, 이 조항으로 인해 서울시 내에서 체벌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된 것이다.

체벌은 예전부터 교사가 주로 쓰는 소위 ‘훈육 방법’ 중 하나였다.

신체에 고통을 줌으로써 행동을 교정하는 것은 가장 직관적이고 효과가 있어 보이면서도 교사에게 간편한 방식이다.

하지만 체벌은 표면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억누를 뿐,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체벌은 고통을 이용하여 학생에게 문제의 원인을 드러내지 말고 혼자서 떠안으라고 강요한다.

이는 학생에게 짐이 되고,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무엇보다 체벌은 교사의 간단한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간의 권력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일상적으로 학생의 태도에 대한 판단과 체벌이 이루어지다 보면 체벌은 교사의 권리가 되고,

학생은 때려도 되는 존재로 전락하기 쉽다. 때려도 되는 사람에게 예의바르게 대할 필요를 느낄 수는 없다.

그래서 체벌은 학생의 지위를 극적으로 낮추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체벌문제는 한국이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이후,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20년이 넘도록 강력하게 지적받은 문제이다.

부모와 교사들이 교육방법의 하나로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고질적인 체벌문제 등도 위원회의 우려사항들이다.

위원회는 특히 다음의 사항들에 관해 법률적 조치들이 마련될 것을 권고한다 :

(...) 모든 형태의 체벌에 대한 명백한 금지

- 199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위원회는 최초보고서 심의 후에 채택된 권고의건의 권고사항,
특히 아래와 같은 문제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d)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위원회는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아동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점에서
체벌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에서의 체벌사용 여부를 개별학교의 재량에 맡긴다는 사실은 일정한 형태의 체벌이
허용되고 있으며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의 징벌을 장려하기 교육적 조치들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관련 법령과 학교운영규칙을 개정, 가정·학교·기타 시설에서의 체벌금지를 명시하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b) 체벌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해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의 해악에 대한 공공교육캠페인 실시

c)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을 대신하는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

-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위원회는 제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 포함되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안들,
특히 (...) 포괄적인 체벌금지, (...) 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적인 보호 상황에서 체벌이 지속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전의 우려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a) 가정, 학교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율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잘못된 처우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공공교육 캠페인을 시행할 것.

그리고 학교에서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지도를 포함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것.
 c) 체벌의 피해자인 아동이 그 사건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

-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3차 권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생의 체벌을 사실상 허용했던 교육부의 2002년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내어 체벌의 완전한 금지를 요구했다.

3.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함.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므로 금지되어야 하며,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학교에서의 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 따라서,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람.

- 또한, 징계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징계에 관한 내용은 학교실정을 고려하되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 규정한 체벌조항은 삭제하여야 함.

- 2002.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의견

하지만 교육부에서 배포한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은 여전히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을 금지할 뿐, 소위 간접체벌은 '교육벌'의 일종으로 분류하며 허용하고 있다.

매뉴얼에서는 교실 뒤에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의 예시가 나왔다.

체벌을 허용하고 체벌 방법을 제시한 청원여자고등학교의 경우, 규정의 내용은 교육부의 매뉴얼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일으킨 직접체벌·간접체벌 논란의 여파가 아직까지 체벌 근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원구 고등학교의 학교규정을 조사한 결과, 몇몇 학교에서 교육부 매뉴얼에 없는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 학생고충처리센터, 체벌 발생시 조치가 명시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에 발표한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를 보면 내용 중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대다수의 학교에서 규정으로 적용했으나, 학생고충처리센터나 체벌 발생시 조치 등 체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인권조례는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2항에서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 내에서 법적으로 완전한 두발자유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노원구에서 완전한 두발자유를 보장하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복장의 경우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하더라도 어디까지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복장’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노원의 경우, 교복뿐만 아니라 모자, 장신구, 가방, 신발, 양말, 내복, 수염, 매니큐어, 문신, 화장, 속눈썹 치장, 컬러렌즈 등 모든 물품에 대한 규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두발·용의복장 규정은 학교별로 비슷한 내용이 많더라도 문구가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오랜 시간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만큼 규제 방침이 자세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교별로 차이가 생긴 것이다. 여기서 규제 방침을 자세히 만들 정도로, **개성을 실현할 자유를 규제하고자 하는 학교의 의도가 뚜렷했으리라**는 것 역시 유추할 수 있다.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충분한 규제 내용이 없었기에 그대로 본떠 만들기 힘든 상황기도 했다. 특히 두발규제의 경우, **2002년**에는 위에서 언급했던 이유로 **‘학교에서 별도로 정한다’** 라고만 하고 그 이상의 언급은 일절 없었다.

2012년, 2014년에 발간된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에는 **정결하고 단정한 관리, 앞머리·옆머리·뒷머리의 길이제한,머리 묶기, 파마·염색·삭발·모발용 고착제 사용·모자 착용·수염 기르기 금지**와 같은 내용이 적절한 규정의 사례에 포함되어 있었다.

용의복장규제의 경우 두발규제에 비해 학생들의 저항이 적었기 때문인지

2002년에도 부차물 위치, 신발, 가방, 신체청결의 내용이 예시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2012년과 2014년에는 **‘방한용 덧옷을 수업시간에 착용하지 않는다’**,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를 엄금한다’** 같은 내용이 적절한 규정의 사례에 포함되어 있었다.

예시안에서 제시한 내용은 아닌 내용에 비해 훨씬 많은 학교가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예외로, 장신구는 예시안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대다수의 학교에서 규제하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이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중 ‘학생 신분에 맞는’, ‘두발 형태의 변형을 가하지 않은 범위 내’와 같은 규정은 표현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넓힘으로서 그 판단을 학교당국이 독점하게 되는 것이라고 두발·용의복장 규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두발·용의복장 규정에 녹아있는 관점의 문제라고 판단하여 크게 친사회적 관점, 학생다움의 관점, 검소함의 관점으로 나누어 규정상의 표현을 분류하였다.

두발규정의 경우 친사회적 관점이 가장 많이 녹아있었으며,

용의복장규정의 경우 학생다움과 검소함의 관점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발견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에도 학생 두발제한 관련 제도가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권고했다.

1.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에서의 두발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각급 학교의 두발제한과 관련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감독 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 두발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4.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강제이발의 중단**이다.

이후 결정례를 살펴봐도 학생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시정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노원에서는 별도로 강제이발을 행하는 학교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 ‘두발벌’은 두발 규제가 **학생에게 강제되는 불이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한편 용의복장규제 중에서는 2009년에 명찰 고정 부착에 대한 시정 권고를 내렸다.

교복에 명찰을 완전히 고정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각종 범죄에 노출시킬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부 예시안의 영향인지 명찰을 강제하거나 올바른 곳에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많은 학교에서 발견되었다. 다만 조사 결과에서 언급했듯이, **명찰을 고정 부착하는 것인지는 규정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3. 사생활의 자유

학생인권조례는 제13조(사생활의 자유) 2항에서

안전상의 긴급한 문제가 아닌 이상 소지품 검사나 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단, 소지품 검사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나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경우에 시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의 경우, 2002년에는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고, 2012년부터 소지품 검사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차이가 있다면,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있으며,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4년 개정판에는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상황 외에는 금지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어 최소성의 원칙⁸²⁾이 상당히 빛이 바래게 되었다. 압수에 대한 내용은 아무 곳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학교 규정의 현실은 어느 쪽의 기준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은 소지품 검사 및 압수의 절차나 원칙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두지 않았다.

압수의 경우 오히려 안전상의 긴급한 문제가 아님에도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전자기기를 압수하는 학교는 절반을 훌쩍 넘었다.

용의·복장 규제를 어기는 경우 해당 물품을 압수하는 학교도 몇몇 있었다.

전자기기를 압수하는 학교가 많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전자기기 규제 역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13조(사생활의 자유) 4항에서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되며,

오직 학교규칙으로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학교 규칙은 학생인권조례 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다룰 것이다.

학교들의 **휴대전화 규제 강도**를 조사한 결과, 소지가 가능하고 수업시간에만 사용할 수 없는 학교는 단 한 곳뿐이었다. 그 외 모든 곳은 휴대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소지만 가능할 뿐 사용 자체를 금지했다.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의 경우, 2002년에는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제 강도만 명시했으나 2012년·2014년에는 휴대전화 규제 강도에 대해 학교에서 토론을 거치라고만 할 뿐 교육부의 입장을 직접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 규정을 예시를 들며 핸드폰 수거제나 콜렉트콜 전화기 설치 등 휴대전화 규제 방법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 특히 기숙학교의 휴대전화 규제에 대해 몇 차례 의견을 낸 적이 있다. 그 의견 중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몇 대의 공중전화로 수시로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중전화가 개방적인 곳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부모 또는 친구와 사적인 내용의 통화를 하기 어렵다”** **“급하게 통화가 필요한데도 교사에게 요청해야 할 경우 전화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불편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알려지게 됨으로써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 **“학습이나 단체생활 관계상 불가피한 수업시간, 자율학습시간, 취침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는 과도하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이에 따르면, 노원구의 많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휴대폰 규제, 그리고 교육부에서 메뉴얼로 밝힌 지침까지 모두 문제가 있다.

교육부의 예시 중 **휴대금지 물품**(음란물, 흡연 관련물,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 흥기류 등)에 대한 부분은 많은 학교에서 일치하는 규정을 찾을 수 있었다. 반면 소지품 검사 절차, 휴대폰 규제 강도 등은 교육부의 예시안과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 부분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처럼 학교의 의도가 뚜렷했기에 학교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다른 점이 있다.**

휴대폰 규제나 소지품 압수의 경우 두발·용의복장 규제와 달리 분실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몇 학교에서는 이 손실의 책임을 학생에게 돌리고 있었다.

더 나아가 **압수한 물품을 폐기처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규제 과정에서 고의로 손실을 발생시키고 그 책임을 학생에게 돌린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학교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이런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⁸²⁾ 부득이한 이유로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그 범위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해야한다는 원칙

4. 의사 표현의 자유

학생인권조례는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3항에서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나,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라는 모호한 제한 조건이 붙어있지만, 집회가 제도적으로 학생의 권리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는 여전히 의사 표현의 자유를 선도규정으로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학교에서는 수업거부, 시험거부, 백지동맹, 등교거부같은 실력 행사나 불법집회, 불법단체, 미허가조직 구성, 선동, 정치관여 등 정치색을 드러내고 움직이는 행위는 모두 증징계하고 있다.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 처럼 **징계를 자의적으로 확정**할 여지가 크고,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 처럼 문제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생활규정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반면,

선도규정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내려져왔다는 설이 유력할 정도로 **오래되었다**.

그래서 상위기관에서 학생의 집회를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할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학교들의 선도규정을 비교하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구절**을 자주 볼 수 있어,

선도규정에도 생활규정처럼 예시안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정부보고서를 보면

여태껏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내용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학교의 규제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의사 표현의 자유 침해가 문제임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15년 동안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교의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학생 신분으로서 집단으로 행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집회로 규정하거나 해산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권고를 냈다.

5. 자치 활동의 권리

학생에게 자치 활동의 권리가 주어지면 학생 집단의 의견과 요구가 보다 쉽게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 집단과 타협해야하는 귀찮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학생에게 자치 활동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학생자치기구는 이런저런 제약과 간섭을 겪어야 할 것이고, 결정사항도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치 활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는 학내 구성원 및 대표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이 있다.

특히 징계가 제한 조건이 된다면, 학생 대표자에게 징계를 내림으로써 권한을 박탈하고 자치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도규정이 모호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실질적인 판단이 선도위원회 구성원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징계를 내리기 쉽다.

학생인권조례는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제3항에서

성적·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든 학생자치활동규정 예시에서는 징계를 대표자의 자격 조건으로 제시했다.

원래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였으나, 개정판에서는 “(사회봉사)” 라고 바뀌었다.

매뉴얼 개정의 영향이 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로 조사했던 학교들은 대부분 **교내봉사 이상(사실상 모든 징계)일 때 자격을 박탈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표자 자격을 성적으로 제한한 것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노원구에는 여전히 성적으로 대표자 자격을 제한하는 학교가 있었다.

자치 활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경우는 **학생자치조직을 금지·제한할 때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다.

아무런 절차가 없다면, 어떤 학생조직이 불량인지 아닌지가 모두 선도규정에 의해 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자치 활동을 손쉽게 통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는 제18조 6항에서** 안전 등을 위해서 학생자치활동의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원구의 **모든 고등학교에 예외없이 불량씨를 및 미허가조직에 징계를 내리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한 학생자치조직 금지·제한 결정의 절차 -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보장, 학내자치조직 의견 수렴** - 를 밟는 곳 역시 **단 한군데도 없다.** 노원구 고등학생에게 자치 활동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6. 학칙 등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는 제도적으로 학교의 학생인권 침해를 개선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리이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는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4항에서** 특히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개정이 진행될 때 반드시 학생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거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은 곳은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서라벌고등학교⁸³⁾**, 학생회와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여는 **불암고등학교**, 규정개정을 심도있게 협의하는 규정개정소위원회(총 위원 수 9인)에 학생대표 3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수락고등학교**가 있다. **나머지는** 학생회 대의원회에 발의권을 주거나, 학생 대표를 참고인으로 삼아 의견을 듣거나, 선택지가 한정된 스티커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 정도 뿐이다.

교육부의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에는 노원구 학교에서 실시하는 여러 방식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모든 학생이 방청할 수 있고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토론회**도 있었다. **하지만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실시하라는 내용은 많은데 비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7.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는 앞서 언급했던 **모든 제한 및 규제와 직결되어있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 제한과 규제를 판단하고 불이익을 가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도규정의 영향을 받는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 활동의 권리에서 징계로 인한 문제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는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항에서 학생의 권리로 크게 다섯 가지를 보장**하고 있다.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내용이 추상적이라 판별해내기 힘든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을 빼고 나머지 네 가지가 학칙상으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는 상당히 극명하게 갈라졌다. 조사 결과, **사전통지와 대리인 선임권은 아무 학교도 보장하지 않았으나, 소명기회나 재심요청권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장**하고 있었다.

단 **염광역자메디텍고등학교**와 **용화여자고등학교**는 친권자의 소명 기회만 보장할 뿐 **학생의 소명기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한 **대진고등학교**는 재심 청구시 **‘납득 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는 단서를 붙여 재심 요청권에 제약을 걸었다.

이 결과는 교육부가 **2002년에 발표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과 거의 비슷하다. 예시안에서도 사전 통지나 대리인 선임권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소명기회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다만 재심은 **학교장이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장이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몇몇 학교 규정은 예시안과 똑같았으나, 대다수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재심 요청권을 주고 있다.

사전 통지와 대리인 선임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분명 문제이나, **학교에서 전혀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83) 단 전원이 참여 가능한지 알 수 없다.

사전 통지의 경우는 논리적으로 사전 통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명기회가 주어질 수는 없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징계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까지 안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의 소명 기회에 대한 언급이 없는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와 **용화여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라고 확신할 수 있다)

다만 얼마나 **빨리, 명확히, 자세하게 안내하였는지**가 문제가 된다.
기습적으로 선도위원회를 열고 징계 당일에 소명을 준비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는 소명 기회를 준 것일지 몰라도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

대리인 선임권을 명시한 학교는 없으나,
친권자나 담당 교사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발언을 듣는다는 내용이 있는 학교는 꽤 많다.
이때 친권자나 담당 교사가 일정 부분 학생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반쪽짜리 권리인** 것은 마찬가지다.
대리인으로 분명하게 선임되지 않은 이상 **안정적인 대리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고,**
학생이 **친권자나 담당 교사를 대리인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학생의 대리인 선임권을 보장하면서,
친권자와 담당 교사 정도면 당연히 학생을 대리해줄 수 있으리라는 **고정관념 역시 깰 수 있을** 것이다.

8. 제안

지금까지 노원구 고등학교의 학교규정을 모아 분석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기준으로 학생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이제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를 짚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안할 것이다.

1.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학교 규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다.
체벌, 강제이발 및 두발별, 소지품 압수·폐기, 압수벌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학교 규정에까지 버젓이 기재되어 있었다. 교육의 탈을 쓴 범죄 행위를 당장 저지해야 한다.

2. 학교 규정에서 드러나는, 학생과 교육에 대한 시대착오적 관점을 고쳐야 한다.

학교 규정에서는 여기저기서 학생과 교육에 대한 시대착오적 관점이 드러났다.
조사에서 드러난 관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학생은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는, 튀지 않는 외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생이 치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학생이 비싼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 학생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집회 등 단체행동은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
6.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이렇게 학교 규정에서는 여전히 **모범 시민**과 **불량배**를 나누고,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장려하는 근대 국가의 가치관이 엿보인다.
하지만 **‘평범함’ ‘학생다움’ 같은 잣대를 만들고 학생에게 강요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대물림하는** 것이다.
‘질서’ ‘교육 분위기’ 등을 강조하며 학생을 옥죄는 것은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군사정권과 다를 바 없다.

학생은 학교의 신민이 아니라 자기 몸과 삶의 주인이다.

학교에 남아있는 **전체주의의 잔재를 깨끗이 씻어내고,** 규율을 강조하는 **피지배자의 교육**을 중단시켜야 한다.

3. 학교 규정 중 애매한 기준을 없애고, 권리 위주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교사의 권력은 **학생인권 침해의 원인**으로 늘 꼽힌다.

교사의 권력이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학교 규정에 애매하고 포괄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두발·용의복장규정, 선도규정에서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상벌점규정에도 **‘교사의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처럼 애매한 규정이 있다.

학생은 절차상으로 아무런 판단 권한도 주어지지 않으며,

학생자치기구도 선도위원회 등의 절차에 개입해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학교 규정이 애매하고 포괄적이면,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사에 따라 학생의 처벌이 좌우된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이 교사와 **동등한 인간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학생 계층이 교사 및 다른 계층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 자치를 활성화**시키고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적으로, **학교 규정 중 애매한 기준들 없애고**

내용을 학생의 **의무/금지 대신 권리** 위주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애매한 기준이 없어도 교사의 재량권이 줄어든다.** 그리고 학교 규정의 내용이 학생의 의무/금지였을 때는 학생이 규정대로 의무/금지를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학교 규정의 내용이 **학생의 권리일 때는 교사가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해야 하므로 **학생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4. 학교 규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학교에서 학칙을 학생들에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이런 학교일수록 **학칙의 실효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짐작된다.

학교 내 다른 계층에 비해 학생이 약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학칙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학칙에서 드러난 것보다도 **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규정은 제대로 감시되어야 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5. 더 이상 학교의 자율성을 핑계로 학생인권 문제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상위기관은 학교의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금껏 그 영향은 대부분 **부정적인 쪽**이었다.

예를 들어, 학교 규정 예시안 및 운영 매뉴얼은 형식적으로만 학생을 고려하는 내용이 많았다.

그리고 학생인권 문제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논의해 결정하라고 미루며**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까지 같이 미루고 있다.

더 이상 학교의 자율성을 핑계로 학생인권 문제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

학교 현장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논리는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가 불평등하고,**

이로 인해 **규정 제·개정 논의도 공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설령 제대로 합의를 거쳤더라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정당성을 얻어서는 안 된다.

상위기관에서는 학교의 인권 침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여야 한다.

6. 학교 규정 예시안 및 운영 매뉴얼을 개선하고, 추후 제작할 때마다 학생인권 영향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학교 규정이 상위기관에서 만든 학교 규정 예시안 및 운영 매뉴얼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은 조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 규정 예시안과 운영 매뉴얼을 개선하면** 학교 규정 역시 나아질 수 있다.

더 나아가, 관련 자료를 제작할 때마다 **학생인권 영향 평가를 진행**한다면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7. 학생인권조례, 그 이상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조례인 만큼 한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반대 세력의 저항에 부딪혔다.

특히 당시 정부는 상위법을 개정하여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방해하였으며,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법적 공방을 펼쳐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데 크게 일조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전 정부가 만든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앞서 말한 학교 규정 예시안과 운영 매뉴얼 개선이 이에 해당한다. 추가로 교육청의 학칙 인가권을 부활시키고,

학칙 제·개정권을 학교장에게만 집중시키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전국적인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법은 조례보다 강제력이 있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9. 노원구 고등학교를 향한 요구

교육은 면죄부가 아니다 - 지금 당장!

- 교육별 조항을 폐기하라
- 두발별 조항을 폐기하라
- 휴대전화 압수별 조항을 폐기하라
- 압수물품 폐기처분 조항을 폐기하라

숨통 틈우기

- 보온용품 규제를 폐기하라
- 속옷·양말 규제를 폐기하라
- 바느질로 박아넣는 명찰을 강제하지 말라
- 압수물품을 친권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폐기하라
- 전자기기 소지금지를 폐기하라
- 소지품 압수 중 학생이 입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는 조항을 폐기하라
- 학생자치조직 대표자의 징계 제한을 폐기하라
- 학생대표 성적기준을 폐기하라
- 징계 절차 중 학생에게 소명기회를 보장하라

보다 넓은 자유

- 두발 규제를 폐기하라
- 교복 그 자체를 뺀 모든 용의·복장 규제를 폐기하라
- 안전상의 시급한 이유가 아닌 모든 압수를 중단하라
- 전자기기 소지 자체에 대한 금지를 폐기하라
- 학내자치조직 구성원 및 대표자의 자격조건을 폐기하라
- 학생들의 자유로운 교내 회합을 보장하라

원칙 세우기

- 학생고충처리센터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행학교를 확대하라
- 체벌 조치를 시행하는 학교를 확대하고, 체벌 교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라
- 학칙 내에 만연한 ‘학생다움’의 강요를 중단하라
- 소지품 검사의 최소성(최소한의 범위 한정, 일괄 검사 금지, 비합리적 검사 금지) 원칙을 확대하라
- 불명확하고 교사중심인 선도규정을 전면 개정하라
- 학내자치조직 금지·제한시 적법한 절차(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를 보장하라
-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생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를 강제하라
- 징계 절차에서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를 보장하라

학생인권조례, 그 너머

- 교복 강제를 중단하라
- 상벌점제를 폐기하라
- 교복 강요를 폐기하라
- 선도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부록 : 못 다룬 내용

학교 규정을 조사하며, 조사 할만한 부분임에도 이런저런 한계로 인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조항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나열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선거활동 제한 : 대표 후보자 공약 제한,

토론회 · 유세 발표내용 사전 심의, 선거운동원 자격제한

경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 규정

제4조(후보자 초청 소견 발표 및 토론회)

- 가. 선관위가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1회 실시하며 후보마다 5분 이내로 의견을 발표한다.
- 나. 각 후보는 선관위에서 지정한 약정토론자의 질문에 성실히 소견을 발표한다.
- 다. 발표내용은 교칙을 준수하며 학교발전을 위해 건전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5조(합동 유세)

- 가. 선관위가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1회 실시하며 후보마다 5분 이내로 의견을 발표한다.
- 나. 발표내용은 교칙을 준수하며 학교발전을 위해 건전한 내용이어야 한다.
- 다. 상대후보를 모함하거나 약점을 들추는 유세는 금지한다.

불암고등학교 학생회 운영세칙 제11조 선거운동

- ① 선거 운동원은 후보자를 포함하여 10~15명에 한한다.
선거 운동원은 학생회장 후보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선거 운동 시 후보자는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다른 특정 후보자를 지지 하도록 권유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학생간의 금품 수수, 선물 제공 등 불건전한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한다.
- ③ 선거 운동은 기초 추첨 후부터 선거일 전일 17:00시 까지만 할 수 있다.
단, 방송을 통한 선관위 주관의 합동연설회는 제외한다.
- ④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1회의 합동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연설회는 한 후보군에 2명(찬조 연설회 포함)으로 제한 한다.
- ⑤ 합동연설회의 연설편 내용은 합동연설회 2일전까지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⑥ 연설편의 분량은 1인 연설 소요 시간 5분 이내로 제한한다.
- ⑦ 각 후보자별로 찬조 연설회를 지정하여 합동연설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찬조 연설회도 학생회장 후보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 ⑧ 벽보는 기초, 성명, 사진, 소견 등의 내용을 명기하여 후보 당 10장 이내로 제작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부착할 수 있다.
- ⑨ 선거 운동을 위한 후보자 개인의 전단 작성 및 배포를 금지한다.
- ⑩ 합동연설회의 진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맡아 공정하게 진행한다.
- ⑪ 학교 밖에서는 어떤 형태의 선거 운동도 할 수 없다.

대진고등학교 학생회칙 제38조 (후보등록취소 및 당선 무효)

- ① 다음의 각 항목 중 1개항이라도 해당되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학생지도위원회는 후보등록 취소 및 당선을 무효 시킬 수 있다.
- 1. 선거 운동 기간 이외의 선거 운동 사실이 있을 때
- 2. 금품수수, 선물 제공 등의 불건전한 선거 운동 사실이 있을 때
- 3. 합동연설회의 연설편 내용이 학생지도위원회에 신고된 내용과 상이 할 때
- 4. 선거 운동을 위한 후보자 개인의 전단 작성 및 배포 사실이 있을 때
- 5. 지정된 장소 및 시간 이외의 선거 운동이 있을 때
- 6.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선전행위
- 7. 학교 밖에서의 선거 운동 사실이 있을 때
- ②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법 선거 운동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을 때 학생지도위원회는 즉시 협의를 통하여 당선을 무효 시킬 수 있다.
- ③ 학생지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불법 선거 사실이 밝혀지면 학생지도위원회는 협의를 통하여 당선을 무효 시킬 수 있다.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자치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3조(선거일의 공고와 입후보 등록)

- ⑦ 제학 중 휴연 및 교외봉사(특별교육)이상의 징계를 받는 등 교육적인 선거문화의 정착과 성숙한 선거 관리 과정에 대해 논란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자치 지도위원(회)의 지도로 해당 학생의 선거운동원 등록을 불허 할 수 있다.

학생자치회 대표 후보자의 공약이나 토론회·유세 등에서의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사전 심의하는 규정이 발견되었다. 심지어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당선을 무효화** 할 수도 있다.

‘**상대 후보를 포함하거나 약점을 들추는 공세**’ 처럼 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은 규제가 필요하지만, 교칙을 준수해야 한다거나 학교 발전을 위해 건전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모호**할뿐더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규정이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에 완전히 어긋난다.

연설문에 대한 사전 심의는 사실상 검열과 마찬가지로이다.

이 조항은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 당사자의 불신과 체념의 원인이며, 학생자치를 저해한 주범이라고 오랫동안 지목받았던 대표적인 악법이다.

이 이외에도 학교 밖에서 선거활동을 금지하거나, 후보자 개인의 **전단 작성 및 배포를 금지**하는 등 **선거활동에 제약**을 거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해서 후보자 간 경제력 등의 차이를 보정하는 장치가 필요하지만, 지금의 규정은 학생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한다기보다는 **불확실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형식적인 절차로 만들 위험이 있다.

선거운동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모든 학생에게 선거권·피선거권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도울 권리도 정계로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 투표자 매수 등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받은 정계가 아닌 이상, 선거운동원이 정계를 받은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이 **투표로** 결정할 문제이다.

학생회 금지활동

대진고등학교 학생회칙

제5조(금지활동)

본 회는 대진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이나 교육 활동에 방해되는 행위 및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7조(활동)

- ②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③ 제①항의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교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효력 정지)

회칙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회 회칙 제4조 금지활동

본 회의 회원은 정당 등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학교의 행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으며, 학칙에 반하는 학생들의 선동 및 단체 활동을 금한다.

학생회칙에서 학생회 또는 회원(모든 학생)의 금지 사항이나 한계를 규정한 곳이 있다.

그 내용을 분류하면 학생회 활동 내용을 **학교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내용, **학생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없애는** 내용,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차단**하고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내용, **‘학생다움’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내용이다.

사실상 학생자치를 가로막는 문제를 모두 모아놓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서약서 강제

불암고등학교 학칙 제42조 서약서

입학(전학, 편입, 재입학 포함)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본인 및 보호자 연서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학 시 학교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 곳들이 많다.
이는 2010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학교 규정 준수·실천 방안**이기도 했다.

하지만 갓 입학한 사람들은 학교 규정에 아무런 의견도 개진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학교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쓰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설령 갓 입학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학교 규정에 학생의 의견이 거의 반영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약서를 강제하는 것은 교사·학부모 등 다른 구성원의 결정에 순응하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에게 저항권이 있는 것처럼, 학생에게도 불합리한 학교 규정에 저항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성교제 규제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4조(이성교제)

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고 이성간의 건전한 교제는 권장한다.

- ① 남·여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③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 한다.
- ④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재현고등학교 선도규정 <별표> 징계기준

37. 학생의 신분에 부적절한 이성교제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퇴학처분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의 규정은 200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규정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학생의 연애·사랑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다루지 않는다.

또한, 내용이 **이성에 중심적**이라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2010년에 청소년 연애 탄압 조사에서 **‘불건전한’ ‘문란한’** 등을 신체접촉,
성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학생의 성행위나 성교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대상으로 보는

반인권적 사고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수년이 지났는데도 같은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교외생활 및 폭넓은 생활양식 규제

영신여자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20조【교외생활】

청소년 관련법에 준하여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혜성여자고등학교 생활규범 제2장 교내의 생활 및 용의복장

제2조 수업예절

- ① 수업 시작중이 울리기 전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펴놓고 기다린다.
- ②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교탁 앞에 서면 회장의 구령에 따라 전체 학생은 “안녕하세요?” 로 인사하며 예의를 표한다.
- ③ 수업 중에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 질문하실 때는 “예” 하고 일어서서 질문에 답한다.
- ④ 수업이 끝날 때는 회장의 구령에 따라 “고맙습니다.” 로 인사하며 예의를 표한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께 인사를 하기 전에 책이나 필기도구 등을 집어 넣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일이므로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

제 3조 (교무실 출입 예절)

- ① 교무실에 들어갈 때에는 용의복장을 단정히 하고 문 옆의 한쪽으로 비켜서서 가볍게 인사한다.
- ② 선생님께 용무가 있는 경우 해당 선생님께 가서 인사를 한 후 바른 자세로 용무를 보고, 돌아갈 때에도 선생님께 인사를 한다.
- ③ 용무가 있는 선생님이 교무실에 안 계실 경우는 교무실 밖에서 기다린다.
- ④ 시험문제 출제 기간 중에는 절대 교무실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 4조 (교직원과 방문객에 대한 존경 및 경어)

교직원이나 방문 손님께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며 만날 때마다 인사한다.

제 5조 (상·하급생 간 인사)

하급생은 상급생에게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상급생은 하급생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하급생 간에 명랑하게 인사를 한다.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2002년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다.
예시안에는 폭넓은 생활양식의 규제도 포함되어 있으나, **혜성여자고등학교**처럼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문제는 양쪽 모두 **나이 어린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보여야 하는 공손함·작듯함·예의바름**이나 **사회가 청소년에게 기대하는 순종·건전함**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제안에서 언급했던, **학교 규정의 시대착오적 관점**이 여기에서도 드러난다.

무엇보다 평소에 어떤 생활을 영위할지,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다.
학생이 따라왔으면 하는 방식이 있다면 학생을 **설득**해야 하지, 학교 규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

그 외, 확보한 수가 너무 적어 조사하지 못한 규정들

학생자치법정 규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교원보호위원회 운영규정 등은 확보한 수가 너무 적어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참고 자료

〈참고한 학칙 목록〉

| 학교 | 학생회 회칙/선거규정 | 생활규정 | 선도규정 | 상벌점규정 |
|-------------|-------------|----------------|-----------|------------------|
|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 0 | 0 | 0 | 0 |
|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 X | 0(학생생활규정) | | |
| 대진고등학교 | 0 | 0 | 0 | 0 |
| 등산정보산업고등학교 | X | 0 | 0 | 0 |
|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 X | 0 | X | X |
| 불암고등학교 | 0 | 0 | 0(학생선도규정) | |
| 상명고등학교 | 0 | 0 | 0(학생선도규정) | |
| 서라벌고등학교 | X | 0 | 0 | 0 |
| 수락고등학교 | 0 | 0 | 0 | 0 |
|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 X | 0 | 0 | 0 |
| 영신여자고등학교 | X | 0 | 0 | X |
| 용화여자고등학교 | 0 | 0(용의/휴대폰 분리) | 0 | 0 |
| 월계고등학교 | X | 0(용의/휴대폰 분리) | 0 | 0 |
| 인덕고등학교 | 0 | 0(용의/휴대폰 분리) | X | X |
| 재현고등학교 | X | 0 | 0 | 0 ⁸⁴⁾ |
| 청원여자고등학교 | | 0(학생생활규정으로 통합) | | |
| 해성여자고등학교 | 0 | 0(학생생활규범으로 통합) | |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생활규정길라잡이, 2011

교육과학기술부·법제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2012

교육부·법제처·인천광역시교육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2014

국가인권위원회,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06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결정·판례 자료집, 2009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의 인권 보장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2016.

서울시교육청, 차별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기본계획, 2010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위원회 장인홍 의원 요구자료, 2015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2016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보고서와 권고문 I, 2006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보고서와 권고문 II, 200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2011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 보고서, 2001.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3.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4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5 불량 학칙 공모전 결과 발표회 자료집, 2015.

청소년운동 우물모임, 청소년운동 우물우물 정체성과 역사 외쳐줌 뿌우-!, 2016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사랑은 19금이 아니다 보도자료, 2010.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 시대를 열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시안과 해설, 2010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인권론, 2004.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생활규정 분석팀,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교칙 분석보고서, 2006

한국교직원신문, "학생 체벌기준 엄격 제한", 2002

한겨레, "초중고 교내생활규정 자율제정 가능", 2002

한국경제, "교육인적자원부, 초중고 교내생활규정 자율제정 가능", 2002

동아일보, "중고생 체벌 '영등이 10회 이내' ...교육부 예시안 제시", 2002

미디어오늘, "학생은 없고 체벌만 있다", 2002

84) 재현고등학교 선도규정이나 생활규정은 2016년 규정집 중 일부를 참조했으나, 상벌점규정은 2012 재현고 그린마일리지 운영규정을 참고했다.

| | |
|-------------|--|
|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 2016 규정집 |
|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 2016 학생생활규정 |
| 대진고등학교 | 2014 용의복장규정, 학생선도규정 2015 생활지도규정, 학생회칙 |
|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 2015 학칙 2016 학생생활규정 |
|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 2015 학생생활지도규정 |
| 불암고등학교 | 2016 규정집 |
| 상명고등학교 | 2014 생활지도규정 |
| 수락고등학교 | 2013 학칙 2015 규정집 |
|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 2010 학교학생생활규정 2014 현장 |
| 영신여자고등학교 | 2012(추정) 규정집 |
| 용화여자고등학교 | 2012(추정) 학생규정 |
| 월계고등학교 | 2015 학생생활지도규정 |
| 인덕공업고등학교 | 2015 학생생활규정 |
| 재현고등학교 | 2012 학칙, 학교생활규정 체벌없는평화로운학교만들기규정, 그린마일리지운영규정 2016 규정집 중 일부 (학생회 회칙, 학생 선도 규정, 학생 용의복장 규정) |
| 청원여자고등학교 | 2014 학생생활규정,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를 위한 생활평점제 규정, 학생 용의복장규정 |
| 혜성여자고등학교 | 2011 학생회칙, 학생생활규범 2012 학칙 |